

연구보고서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2009. 3.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보험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대책마련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가중, 퇴직연금의 미정착,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 가입률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및 현행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감안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목 차

요 약	11
I. 서 론	43
1. 연구배경 및 목적	43
2. 연구내용 및 범위	46
II. 고령사회 도래와 노후소득보장체계	48
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48
2. 인구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 발생구조	53
3.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체계	55
III.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57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57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63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79
IV.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비교	81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	81
2.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85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92
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	98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104

V.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108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108
2. 분석모형의 설정	109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119
4.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	122
5. 분석상의 시사점	130
VI.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32
1.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132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	133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143
4.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151
VI. 결 론	153
참고문헌	155

<표 차례>

<표 요약-1>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Ⅰ)	28
<표 요약-2>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Ⅱ)	29
<표 요약-3> 적정소득대체율 산출 결과	30
<표 요약-4> 실질소득대체율 산출 결과	30
<표 요약-5>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35
<표 요약-6>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운용체계	38
<표 요약-7> 역할분담 전·후의 운용수익률 및 연금가입액 추정	39
<표 Ⅱ-1>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48
<표 Ⅱ-2> 고령화 진전과 노년부양비 전망	49
<표 Ⅱ-3>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 장기전망	51
<표 Ⅱ-4> 고령화 단계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52
<표 Ⅱ-5> 개인의 고령화리스크 부담률	55
<표 Ⅲ-1>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체계	57
<표 Ⅲ-2> OECD기준 노후소득보장체계	59
<표 Ⅲ-3> 국민연금법 내용 및 특징	60
<표 Ⅲ-4> 퇴직연금제 유형 및 특징	61
<표 Ⅲ-5> 개인연금제 유형 및 특징	62
<표 Ⅲ-6> 국민연금 개정 전·후의 재정전망	64
<표 Ⅲ-7>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소득수준별 급여수준 변화	66
<표 Ⅲ-8> 개정이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7
<표 Ⅲ-9> 회사규모별 계약체결실태	69
<표 Ⅲ-10>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실태	70
<표 Ⅲ-11>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71
<표 Ⅲ-12>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73
<표 Ⅲ-13> 선진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비교	74

<표 III-14>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한국)	75
<표 III-15>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선진국)	76
<표 III-16> 개인연금 자산규모 및 성장률 추이	77
<표 III-17> 개인연금 납입금 및 성장률(은행 및 생명보험사)	78
<표 IV-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OECD 제시안	81
<표 IV-2> World Bank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5)	83
<표 IV-3> ILO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0)	84
<표 IV-4> OECD 국가의 연금제도 형태	87
<표 IV-5> 퇴직연금 가입 강제성	91
<표 IV-6> OECD국가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94
<표 IV-7> 노후소득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험요율	96
<표 IV-8>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Ⅰ)	105
<표 IV-9>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Ⅱ)	106
<표 V-1> 은퇴 정의와 기준	116
<표 V-2> 남자와 여자의 기대여명	117
<표 V-3> 연도별 임금상승률	118
<표 V-4>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운용수익률	119
<표 V-5> 소비함수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량	121
<표 V-6> 가국소비함수 추정결과(Ⅰ)	124
<표 V-7> 주요 균등화 지수	126
<표 V-8> 가구소비함수 추정결과(Ⅱ)	127
<표 V-9>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128
<표 V-10>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자산 산출결과	129
<표 V-11>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연간수급액 산출결과	129
<표 V-12>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130
<표 VI-1> 퇴직금부체계의 개선	134
<표 VI-2> 연금세제체계의 개선	135

<표 VI-3> 적립금 운용규제체계의 개선	136
<표 VI-4>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139
<표 VI-5> 연금운용형태의 개선	140
<표 VI-6>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144
<표 VI-7>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운용체계	149
<표 VI-8> 역할분담 전·후의 운용수익률 및 연금가입액 추정	151

<그림 차례>

<그림 요약-1>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31
<그림 요약-2>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 설계(안)	37
<그림 II-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50
<그림 II-2>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50
<그림 II-3> 65세 이상 건강보험 의료비 추이	53
<그림 II-4> 고령화의 진전과 고령화 리스크 발생구조	54
<그림 III-1> 퇴직연금제도 운용실태	69
<그림 III-2>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한국)	72
<그림 III-3>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영미)	73
<그림 IV-1> OECD 주요국의 임의 사적연금 가입율	88
<그림 IV-2>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 (2007년 기준)	89
<그림 IV-3> OECD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분 ..	93
<그림 IV-4> OECD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	97
<그림 IV-5> 프랑스 연금제도	101
<그림 IV-7> 영국의 연금제도	103
<그림 V-1> 모딜리아니 피라미드(평생소득가설)	110
<그림 V-2> 은퇴연령	115
<그림 V-3> 소득의 구분	120
<그림 V-4>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131
<그림 VI-1> 영국 중위소득자의 예상소득대체율	144
<그림 VI-2>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모형 설계(안)	147

요 약

I. 서 론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노후소득대책 마련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은퇴기간의 확대 및 근속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 준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가입률, 퇴직연금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연금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검토한 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교하고,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의 노후소득 보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와 달리,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다루고 있음.

- 즉, 근로자의 소비행태를 통해 적정소득대체율을 추정함과 더불어, 최근의 노동여건 및 연금제도 하에서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방안을 모색

II. 고령사회 도래와 노후소득보장체계

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사회 도래는 인구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률, 노후복지비용, 공적연금재정, 건강보험재정 측면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생산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증대 및 저축감소, 고용창출의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노후복지비용 측면에서 볼 때, 사회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 증가는 기초보장 수급자 수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2. 인구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 발생구조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개인수명 연장은 개인, 기업 및 정부에 각기 다른 고령화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음.
 - 개인에게는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리스크 등이 발생하는 반면, 기업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제공을 위한 보험료 지출로 인해 재무리스크가 발생함.
 - 정부의 경우, 각종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유지 및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리스크가 발생
- 이러한 개인, 기업, 정부의 고령화리스크는 개인에서부터 발생하여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개인과 기업이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음.
 - 즉, 근로자에게는 생존·건강·자산리스크 등과 같은 고령화리스크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는 기업, 정부에게 각각 재무리스크, 재정리스크로 전가하게 될 것임.

3.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체계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근로자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리스크와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현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이 증대함.

Ⅲ.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로 분류되며, 외견상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성
 - 공적부조의 형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가 있음.
 -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수급구조 불균형이라는 내재적 요인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이에 따라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안을 개정하였는데, 개정안은 국민

연금제도의 구조적 골격을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수적(parametric) 개혁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음.

- 둘째, 200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 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임의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수탁기관 간 1대1 계약형태를 띠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을 도입한 후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도입·운용되고 있음.
 - 구 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시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신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납입액 전액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며, 신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경우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 측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계성 측면, 사적연금의 역할 및 기능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우선,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2007년 제 2차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로 연금재정의 불완전성이 상당 정도 개선하였으나, 여러 문제를 내포
 - 즉,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기존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근본

적으로 수정하여 보험계리적 수지 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순수부과(PAYG) 방식으로 전환 될 경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차후 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후세대로 갈수록 소득대체를 감소폭이 커지며, 소득계층별로 노후소득보장의 효과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급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근로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이 후소득 보장체계는 존재하나, 국민·근로계층 간·피용자와 자영업자 간의 기여율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즉,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민간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제도와 민간제도 연계에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
 - 이는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 수급권 보호장치 미흡, 연금전환대책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자산운용규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운용의 안전성 제고차원에서 양적규제 보다 질적 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수익률 저하 등을 초래하여 금융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근로자와의 이익상충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노사 간의 신뢰부족 등으로 기금형 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발달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 우선 변제제도 및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장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근로자에게 완전한 수급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 개인연금 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후소득 보장 기능으로서의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저조한 수준
- 미·일 등 선진국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25% 이상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의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보다 성숙된 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계층 간 형평성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과,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IV.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특징 비교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권고안

- OECD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소득재분배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부분을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완전 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 등으로의 분리를 권고
- 또한,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적립방식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권고
- World Bank는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음.
- 즉, 과다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기업 부문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다층의 공사연금 체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있음.
 - 첫 번째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기초소득보장,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완하는 강제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제도, 임의 적용하는 개인연금 제도의 4층 체계임.
 - 두 번째 방안은,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을 명목확정각출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

2. OECD 국가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가. 연금제도 형태

-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연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1층)과 보험 기능(2층)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
 -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연금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부분이며, 보험기능은 근로기간 동안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은퇴이후 목표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부분임.
 - 이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임의연금은 3층으로 구성되는데, 연금제도의 제공주체 및 급부결정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분류가 가능

-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1층 제도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기초연금제도, 자산조사제도, 최저보증연금제도로 구분됨.
 -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은퇴자에게 동일한 정액급부를 지급하거나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로, 13개 국가에서 기초연금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자산조사제도와 최저보증연금제도는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산조사제도는 부유한 은퇴자의 급부를 감소시키고 빈곤계층에 속한 연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저보증연금제도는 특정수준 이하로 연금급부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금제도의 2층 부분에서는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며, 은퇴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은퇴자에게 적정 소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OECD 16개 국가의 경우 국가가 수급자에게 기여년수 및 개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되나,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기여액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급부를 차등지급하는 점수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형태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경우와 같은 민간형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헝가리, 멕시코, 호주 등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운영되는 명목확정기여형 제도가 있음.

나. 연금가입률

- 퇴직연금가입이 임의인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연금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
- 이에 반해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0% 미만의 근로자가 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국의 임의사적연금 가입률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연금자산 비율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연금 자산비율이 2.9%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은 연금 자산규모가 GDP를 상회하는 반면, 폴란드, 헝가리 등은 10% 내외로 저조하게 나타남.

라. 연금가입 강제성

- 호주, 칠레, 홍콩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완전대체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특징은 연금개혁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확정기여형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점임.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부분대체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법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회적

연대에 의해 가입이 강제화 됨.

-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가입함.

마. 연금 운용형태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헝가리 등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 최근 호주,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급불능에 처한 동유럽 국가 또한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목적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으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30년 가입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40~45%에 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사연금에 의한 적정 수준의 총 노후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음.
- World Bank가 세계 각국의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층 보장의 경우 약 30%, 2층 보장에서는 30%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설

정하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의한 총 소득대체율은 약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자에 대한 총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31%(영국)에서 96%(그리스)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소득대체율 평균은 58.7%인 것으로 나타남.

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

-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체계에 따라 국민연금 완전대체형, 국민연금의 부분대체형, 국민연금의 보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 역할을 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크고, 보완역할을 할 경우 유능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완전대체 또는 부분대체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의 가입이 강제화 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보완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사적연금이 임의 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이와 같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경우 공적연금 중심형, 공적연금 대체형, 공사연금 조화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적연금 중심형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사적연금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
 -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공적 소득비례 연금에 거의 전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

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공적연금 대체형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이 대체하는 형태로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형, 단체협약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분대체형, 적용제외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은 호주, 홍콩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완전 대체하는 방식이며,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형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일부를 법정 퇴직금 형태로 부분 대체하는 방식
 - － 단체협약에 따른 부분대체형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행하는 형태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
 - － 적용제외형은 일본, 영국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방식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형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사적연금의 가입이 세제혜택 등으로 자발적으로 유도되는 형태로 미국이 대표적임.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 각국의 시장 환경 및 복지 수준에 따라 사적연금의 기능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역할이 작은 시장주의적 시스템에서는 사적연금이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유럽의 복지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칠레 등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으로 완전 대체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 역할을 담당

V.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 근로자들이 은퇴 전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 후에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적정 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효과(실질 소득대체율)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함.
 - 첫째, 일반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개념을 노후소득 보장수준 지표로 설정
 - 이를 위해 노동패널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가구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은퇴 이전의 소득 수준 대비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의 비율을 이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
 - 둘째,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재 근로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감안할 때 표준 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로 보고, 은퇴 후 생활이 연금 소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실질 소득대체율은 노동패널상의 평균소득계층이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이후의 예상소득을 기초로 산출
- 특히, 퇴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연간 임금 총액의 8.33%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근로기간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을 위해 가입기간을 30, 35, 4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함.

2. 분석모형의 설정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모형

-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은퇴 후 가구소비 예측치와 은퇴 전 가구소득과 의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함수를 설정하기로 함.
 - 즉, 은퇴이후 가구 소비 예측을 위해 평생소득가설을 기초로 가구주 특성을 반영한 동태적 최적화 문제를 통해 가구 소비함수를 경제적 능력변수와 가구특성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
 - 가구특성벡터를 나타내는 X_{it} 에는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유무, 주택소유여부, 은퇴여부 등이 포함

$$\log C_{it} = \alpha_0 + \alpha_1 \log Y_{it} + \alpha_2 X_{it} + \nu_i + \epsilon_{it}$$
 여기서, C_{it} : 가구소비, Y_{it} : 가구소득, X_{it} : 가구특성벡터,
 ν_i : 개별가구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ϵ_{it} :통상에러
 - 또한, 서로 다른 가구규모 사이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설정함.
 - 이를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가구소득을 조정해 주는 OECD 균등화 지수를 사용함.

$$\log(C_{it}/n_{it}) = \beta_0 + \beta_1 \log(Y_{it}/n_{it}) + \beta_2 X_{it} + \tau_i + v_{it}$$

여기서, C_{it} : 소비, Y_{it} : 소득, X_{it} : 가구특성벡터, n_{it} : 균등화지수,

τ_i : 개별가구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v_{it} :통상에러

나. 적정소득대체율 산출모형

- 근로기간 중 연금가입을 통해 은퇴이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규모가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기간 동안의 연금수급액을 산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을 설정하여 은퇴시점의 연금 자산 규모를 추정

$$TC_{i,k} = \sum_{t=s}^{e-1} r_c W_{i,t} \times \prod_{j=k}^t \frac{(1+w_j)}{(1+\gamma_j)}$$

여기서, $TC_{i,k}$: k 시점에서의 생애보험료, i : 가구, k : 기준시점,

s : 최초가입시점, e : 가입종료시점, r_c : 보험요율,

$W_{i,t}$: t 기의 연간임금소득, w : 임금상승률, γ_j : k 시점의 할인율

- 생애보험료 산출모형에서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연령, 가입기간, 은퇴기간,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요구됨.
- 고령화 패널조사(2006)상의 평균 은퇴연령 및 전병힐(2008)이 제시한 평균 은퇴연령추정방정식의 결과 등을 이용하여 평균 은퇴연령은 58세로 가정
- 은퇴 이후의 연금 수급액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은퇴시점에서의 기대여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기로 함.

- 통계청의 기대여명 자료(2008년 12월)를 기준으로 볼 때 58세의 평균기대여명은 24.6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용하기로 함.
-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산출을 위해,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를 이용
- 1997년에서 2007년 2분기 동안의 평균 실질 임금상승률인 2.80%를 적용시키기로 함.
-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투자수익률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비교한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1.54%, 2.10%를 적용함.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 적정 소득대체율 및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은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용됨.
- 첫째, 개별가구 특성을 반영한 적정 소득대체율 추정을 위해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차년도 자료를 이용
- 둘째,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 과정에서는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 통계청의 생명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공시자료 등을 이용

4. 노후소득보장 효과 결과 분석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게 되면 가구주 연령, 가구주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 가구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교육수준, 주택소유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소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 가구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증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일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더미변수로 사용된 은퇴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게 나타남.
 - －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 보다 더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요약-1>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1)

log(소비)	가구 규모효과 미반영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3821 *** (0.0044)	0.1148 *** (0.0045)
가구주 연령	0.0675 *** (0.0023)	0.0356 *** (0.0014)
(가구주 연령) ²	-0.0005 *** (0.0000)	-0.0003 *** (0.0000)
성별 (남성=1)	0.0157 (0.0133)	0.0778 *** (0.0074)
교육수준	0.0673 *** (0.0056)	0.6815 *** (0.0019)
광역도시 거주여부 (거주=1)	0.0010 (0.0119)	0.0309 *** (0.0046)
결혼유무 (결혼=1)	-0.0513 ** (0.0200)	0.0452 *** (0.1330)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151 *** (0.0050)	0.0278 *** (0.0043)
가구 구성원수	0.0079 *** (0.0021)	0.3920 *** (0.0018)
은퇴여부 (은퇴=1)	-0.0282 *** (0.0079)	-0.0716 *** (0.0073)
상수항	-0.2941 (0.0675)	0.3957 (0.0381)
R-squared	0.0327	0.5448
Hausman Test	$\chi^2 = 1849.25$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한 소비함수식의 경우 또한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이 가구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가구소득,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증가함.
 - 둘째, 광역도시 거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표 요약-2>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II)

log(소비)	가구규모효과 반영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0327*** (0.0045)	0.1142*** (0.0045)
가구주 연령	0.0607*** (0.0023)	0.0328*** (0.0014)
(가구주 연령) ²	-0.0004*** (0.0000)	-0.0003*** (0.0000)
성별 (남성=1)	-0.0689*** (0.0013)	0.4012*** (0.0071)
교육수준	0.0665*** (0.0058)	0.0665*** (0.0018)
광역도시 거주여부 (거주=1)	0.0038 (0.0123)	0.0287*** (0.0045)
결혼유무 (결혼=1)	-0.1902*** (0.0204)	-0.0484*** (0.0127)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071 (0.0052)	0.0240*** (0.0042)
은퇴여부 (은퇴=1)	-0.0124 (0.0081)	-0.0611*** (0.0073)
상수항	-0.1182 (0.6968)	0.5006 (0.0375)
R-squared	0.0064	0.4042
Hausman Test	$\chi^2 = 17466.73$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의 소비비율을 통해 산출된 적정 소득대체율은 61.5 ~ 64.9%에 이름.

- 가계 소비함수의 회귀선상 값으로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가 파악된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추정치를 구한 후,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비비중,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비 비중의 결과는 61.5 ~ 64.9%에 이릅니다.

<표 요약-3>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가구규모 미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1.0428	0.3918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495	0.3624
가구규모 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0.9813	0.4024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147	0.4178

나.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 생애보험료 산출식 및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5.8 ~ 20.0%에 불과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6.3 ~ 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 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의 경우 9.4 ~ 12.5%인 것으로 나타남.

<표 요약-4>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단위 : %)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6.3	9.4	7.0	11.0	7.5	12.5
15.8		18.0		20.0	

5. 분석상의 시사점

-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64.9%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기간 3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5%에 그치고 있음.
 - 표준소득근로자가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실질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 30년, 35년 기준으로 각각 18%, 20%로 나타남.
 - － 이에 따라, 가입기간 35년 기준으로 적정 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공적연금에서 45%를 보전하여야 하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공사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효과는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70~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연금 간의 역할 분담 체계에 의한 다층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요구됨.

<그림 요약-1>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3층 개인연금	10 ~ 20%		개인연금	7.5%
2층 퇴직연금	30%		퇴직연금	12.5%
1층 공적연금	30%		국민연금	35%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70 ~ 80%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
55%

VI.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필요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이 65% 수준에 이르므로, 이에 준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공사연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 하에서의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 고용구조 등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구조적(시스템적) 또는 부분적(파라메타적) 측면에서의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즉, 연금제도 전체의 틀을 제시하는 구조적 연금 개선을 통해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자체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적 연금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

가.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장점을 완화하여 가되, 장기적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법정 퇴직금제도의 장점 감소 및 폐지는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증대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이에 따라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의무화를 단기적으로 세제지원과 연결시키고, 장기적으로 신설사업장에 대해 예외 규정 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퇴직연금제도 혜택의 미흡, 퇴직급여 총당금 손비한도의 과도한 인정 등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 작용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연금세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
 -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 차원에서 기업의 퇴직급여 총당금 손비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실질적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급여 불입액 중 소득공제 한도를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발전 차원에서 현행 양적규제의 적립금 운용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양적규제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로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 제약의 극복을 위해, 자율규제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 다만, 이 경우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장치 등과 같은 퇴직연금 규제 완화 보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될 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립금 과부족시 연금재정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연금지급 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불이행시의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 및 비계속 기준시의 연금재정 검증 절차 등의 체계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연금수리개념에 입각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책임준비금 검증 및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발전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것이 요구됨.
 - －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익분배형, 주식상여형, ESOP, SEP 등과 같은 형태의 검토가 요구됨.

나. 개인연금제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요구되므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인연금제도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계층 보다 낮은 소득 계층의 연금가입 유도를 위한 소득공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요구하는 연금가입 기간 충족시 개인의 납부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 등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 검토가 요구됨.
- 넷째, 계약이전제도의 보완 및 해지시 불이익 해소 방안에 관한 모색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

가. 역할분담모형 설정의 제가정

-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체계 모색을 위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의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
-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평균 증가율 3.81%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은퇴이후 최저생계비액을 추정

-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은퇴 전 소득은 은퇴직전 근로소득과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표준가구의 은퇴 전 근로소득 대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로 정의
-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 절차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며, 연금가입은 30년, 35년, 40년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금 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은퇴직전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21%로 나타남.

<표 요약-5>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구 분	30년	35년	40년
은퇴직전 근로소득기준(A)	18.4%	19.0%	19.7%
은퇴직전 3년평균 근로소득기준 (B)	20.0%	21.0%	22.0%
평균 소득대체율	19.2%	20.0%	20.9%

나. 역할분담 모형의 기준 설정

-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연금 간의 역할 분담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에서의 사전적인 퇴직연금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필요

-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보완기능,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기능, 퇴직 연금의 대체기능 일부 인정에 대한 결정이 필요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역할을 공적연금의 보완기능에서 대체기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감소를 위해 현행 퇴직연금의 공 적연금 보완기능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전환하는 역 할 분담체계 구축이 요구됨.
- 그러나, 퇴직연금이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원활히 정착하여 간다는 전제 하에서, 보완형 자체 속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 연금 역할분담체계 방안이 병행될 필요성이 존재

다. 역할분담 모형의 설계 및 특징

- 우리나라에 고려될 수 있는 공사연금 역할 분담체계는 공적연금 우위형, 공사연금 조화형 보다는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형이 바람직하나 여 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
- 공사연금 역할 분담모형의 설계시 소득비례부분의 법정 완전대체형 등과 같은 공적연금 민영화 방안 추진에 따른 제약 및 적용제외형 적용의 한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경우, 적용제외 방안과 민영화 방안을 절 충한 역할 분담모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부분적 민영화 모형으로 공적연금에 기초한 기초소득보 장과 사적연금방식으로 소득비례부분을 운용하는 모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 부분은 공적연금제도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부분을 퇴직연금에서 통합 운영하는 모형이 제시 가능함.

<그림 요약-2>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 설계(안)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개인연금	7.5%	개인연금 (7.5%+α)	α % 7.5%
퇴직연금	12.5%	퇴직 + 소득 (37.5%)	22.5% (퇴직연금) 15%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
국민연금	35%	기초연금 (20%)	20% (기초연금)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 55%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 65%

- 연금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소득대체율 65%와 연금제도에 의해 실현 가능한 실질 소득대체율 55%의 차이를 고려한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면 <요약 그림-2>와 같음.
-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20%,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15%,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2.5%, 개인연금 부분의 소득대체율 7.5%+α 등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라. 역할분담 모형의 운용체계

- 공적연금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 부분은 공적연금제도로 계속 운용하되, 소득비례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재분배 부분은 소득대체율 20% 수준의 확정급여형 기초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소득대체율 20%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초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득비례부분 15%는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완전적립 방식의 확정기여형 또는 명목확정기여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표 요약-6>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운용체계

	역할분담	
	연금형태	적용방식
소득비례부분	소득비례연금 (적용제외)	확정기여형 방식 (완전적립식 DC형, 또는 NDC)
소득재분배부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0%수준 적용)	확정급여형 방식

- 공사연금 역할 분담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3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대체율을 12.5%에서 22.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사전에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 공사연금 역할 분담에 따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 및, 노후대비를 위한 근로자 추가납입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는 역할 분담 전 가정한 운용수익률을 4.77%에서 6.85%로 제고 시키거나, 역할 분담 전에 비해 근로자 보험료 기여율을 6.71% 만큼 추가 납입할 필요성이 있음.

<표 요약-7> 역할분담 전후의 운용수익률 및 연금가입액 추정

	운용수익률 부분		연금가입액 부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퇴직연금	4.77%	6.85%	보험료 기여율 8.33% (임금의 1/12)	보험료 기여율 8.33% + 6.71% (근로자추가납)
개인연금	5.33%	5.33% + a	20만원	20만원+a

주 : 운용수익률은 명목투자수익률 기준임

4.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요구됨.
- 첫째, 고령사회의 도래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후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
- － 정부의 경우 재정리스크 감소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기업은 고

용구조 변화 등을 통해 은퇴 후 노후소득 보전 대책을 강구하며, 개인은 근로기간 및 은퇴기간을 고려한 사전적 노후소득 대비가 필요함.

- 둘째,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설정한 후 공사연금간 역할 분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셋째,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위해 연금제도의 개선 로드맵이 사전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기초한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VII. 결론

- 인구고령화에 낮은 노동시장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 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짐.
 -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향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여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금소득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55% 수준으로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고 있어 연금 소득의 노후소득보

장기능 재검토가 요구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적 개선과 더불어 시스템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적 개선 차원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급부체계, 연금세제체계, 적립금 운용체계,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개인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차원에서 볼 때 공사연금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대책 마련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은퇴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점점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우 단지 38.3%만이 연금 이외의 별도 노후소득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처럼 60%이상의 근로자가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²⁾,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가입율, 퇴직연금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적극 해소하면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비교한 후에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제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분석 이외에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는 걱정(목표) 소득대체를

1)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2008.6., P.106.

2) 2007년 7월의 국민연금제도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더 연장될 것으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는 추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가 은퇴이후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시현할 수 있는 실질(예상) 소득대체율의 추정이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대체율 추정 및 이에 기초한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을 모색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드문 이유로는 개인연금과 관련된 기초데이터의 부족, 퇴직연금제도의 일천한 시행,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의 어려움(추정방법의 미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소득대체율 개념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다룬 국내선행연구로는 원종욱(2000), 안종범·전승훈(2005), 여윤경(2002), 임병인·강성호(2005), 석재은(2000), 방하남(2005)의 연구 등이 있다. 원종욱(2000)은 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또는 평균소득수준을 벌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53%~71%로 추정하였다.³⁾ 안종범·전승훈(2005)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가구소비 예측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동일가구의 은퇴전·후 소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소득자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은퇴전 소득대비 66.55%로 추계하였다. 여윤경(2002)은 생애주기가설에 의거하여,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을 부부가계의 경우 82.4%, 독신가계의 경우 85.1%로 추계하였다.⁴⁾ 임병인·강성호(2005)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3대 주요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하는 경우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3) 한편 미국에서 많이 거론되는 Alford et al(2004)는 적정한 소득대체율로 75~89%를 제시한다. 이 수치는 외벌이 가장이 65세에 은퇴하고, 배우자는 62세 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연간 소득이 2만 달러인 경우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8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하락하여 6만달러인 경우는 75%로 가장 낮아지다가, 25만 달러인 경우는 88%로 재상승한다.

4) 여윤경(2002)이 추정한 목표 소득대체율은 은퇴이전의 소비패턴으로부터 예측된 은퇴이후 소비 대비 은퇴이전 소비수준으로, 부부가계와 독신가계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월소비 액수에 따라 각각 47.7~118.8%, 64.9~115.9%로 분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중앙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재은(2000)은 노인의 소득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하남(2005)은 선진국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고 공사연금의 연계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즉 제도전환의 미완결성, 제도전환의 인센티브문제, 통산장치의 문제, 연금수급권의 문제, 지급보장장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개념에 의해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국제적 관점에서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Estelle and Brooks(2001), Laboul(1998), World Bank(2000) 및 OECD(2007)의 연구 등이 있다. Estelle and Brooks(2001)는 세계 각국에서 공사연금제도의 개혁을 시행한 후 조사된 1층, 2층 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총소득대체율, 그리고 2층 보장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1층 보장과 2층 보장에서 0%의 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각각 1층보장이 약 30%, 2층 보장이 약 30%의 평균소득대체율을 설정함으로써 총소득대체율은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Laboul(1998)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19개국의 총소득대체율(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시한 결과 전체국가의 평균이 약 65%로 추정되었으며 퇴직연금 가입율은 공적연금을 대행 또는 대체할 경우 80~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World Bank(2000)에 의하면 사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퇴직금의 8.3%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일정이율(5~6%)이상으로 운영한 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25%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5년 근속 기준). 또한 OECD(2007)에서는 OECD국가의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을 저소득층(평균소득의 0.5배), 고소득층(평균소득의 2배), 평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OECD국가를 평균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73%,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49.2%, 평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58.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 대부분은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

후소득보장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의 소득대체율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소득 및 소비 행태를 통해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함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최근과 같은 노동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경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제도가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효과(노후소득보장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국노동연구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처음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득대체율 추정결과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부분적 개선(파라미터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시스템적 개선)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로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제고라는 큰 틀 하에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또한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우리나라 근로자의 명목(적정) 및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인구고령화와 고령화 리스크의 발생구조, 고령화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기준으로 고찰한 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용상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공적연금 재정위기 구조화,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취약,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사적연금의 역할 및 기능한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상의 정책과제를 시사점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모형을 살펴본 후에 OECD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수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공사연금의 역할분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특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여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V장은 한국노동패널자료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적정(목표)소득대체율을 가계지출함수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으며, 또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평균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해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효과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VI장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및 역할제고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사적연금중심)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역할분담중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에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에서는 제V장의 적정(목표) 소득대체율 및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그리고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등을 토대로 시안적 차원에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을 실제 설계하고 그 운용체계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선이라는 틀에서 공적 연금의 개선을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모색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Ⅱ. 고령사회 도래와 노후소득보장체계

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속도는 일본에 비해 20년 늦은 수준이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에 비해서는 6년 정도 늦은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는 18년 만에 진입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8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일본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진입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7년 내에 고령·초고령사회 모두를 맞이하게 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Ⅱ-1>참조).

<표Ⅱ-1>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재구성

이처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사회 도래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및 영향 상태 개선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 저하 및 가임여성의 감소에 의한 빠른 속도의 출생아 감소에 기인한 바 크며, 이는 중위연령의 상승, 생산인

구의 감소, 노년부양비의 상승, 고령화지수의 급증, 그리고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급증 등과 같은 인구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⁶⁾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령화지표인 노년부양비만 보는 경우(<표Ⅱ-2>참조), 2000년 11.4%(생산가능 인구 8.7명이 노인 1명 부양)의 노년부양비 수준이 2050년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67.5%(생산가능 인구 1.48명이 노인 1명 부양)의 노년부양비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사회 도래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Ⅱ-2> 고령화 진전과 노년부양비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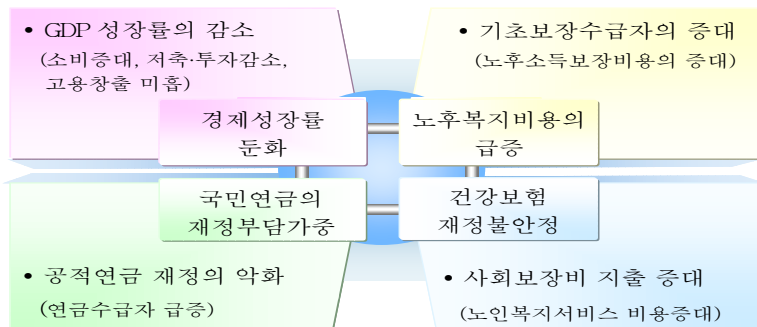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덴마크	25.5	29.6	35.7	42.0	47.0	43.7
독일	28.0	34.1	38.6	50.3	57.0	56.1
스페인	28.7	30.7	35.2	44.7	59.8	68.7
프랑스	28.5	29.5	38.1	46.4	52.1	53.2
이탈리아	30.7	35.5	42.1	52.9	67.8	69.7
네덜란드	23.1	26.2	34.7	44.2	50.1	46.9
오스트리아	26.3	30.1	34.5	47.0	57.0	57.7
포르투갈	26.7	28.5	32.2	37.2	46.3	50.9
스웨덴	30.9	33.8	39.8	45.4	48.9	48.5
영국	27.8	28.5	33.9	43.1	49.1	55.9
한국	11.4	14.7	23.1	38.5	55.7	67.5

주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 15-64세인구) × 100

- 5) 2005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7.9세이지만 2050년에는 약 83.3세로 선진국의 평균 81.6세 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96년에는 1.71명에 도달함으로써 선진국에서 100여년이 소요되었던 출산율 전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져 높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6) 김승권, 고령화 한국의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2008.2.

결국 고령사회 도래는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 노후복지비용, 공적연금재정, 건강보험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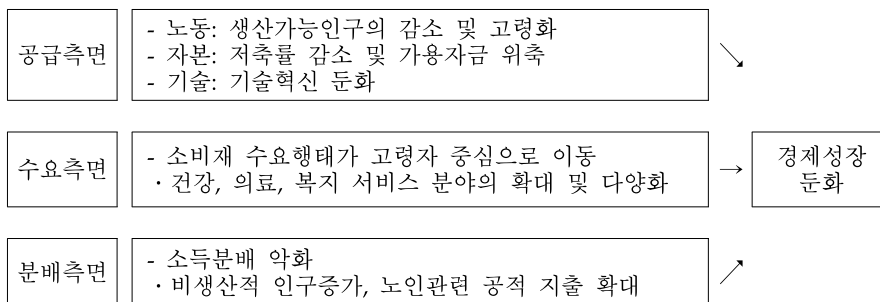
<그림 II-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료 : 류건식,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2008.6.

첫째,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증대 및 저축감소, 고용창출의 미흡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엄동욱·이은미,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OECD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비용 측면에서는 사회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매우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기초보장수급자를 절대적으로 증대시켜 국가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비용이 복지국가에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더구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증가는 치매노인,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절대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비상승과 복지비용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 장기전망

연도	대상자수 (천명)	1인당 평균급여액(월액, 천원)		총비용(조원)	
		경상가격	2007년 가격기준	경상가격	2007년 가격기준
2010	3,748	105	87	5	4
2020	5,475	276	128	18	8
2030	8,329	596	161	60	16
2040	10,549	979	163	123	20
2050	11,055	1,595	163	212	22
2060	10,208	2,501	164	306	20
2070	9,047	3,884	164	422	18

자료 : 문형표 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셋째, 공적연금재정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가 노년 부양비를 증대시켜 공적연금수급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 일본 등은 많은 저출산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제도 도입 시의 문제점과 급속한 출산율저하로 인하여 어느 사회에서 보다는 더욱 심각한 연금재정위기 상황에 내몰릴 위험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표 II-4> 고령화 단계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단위 : %)

	부양비/ 노령인구	연금/ GDP	공적연금 보험요율	가입비율	연금재정	연금부채
1단계	5.7	0.6	8.0	15.7	47.1	5
2단계	8.5	3.3	13.7	45.4	34.9	40
3단계	18.9	8.5	24.6	89.4	-19.6	150
한국	8.4	1.1	9.0	39.0	43.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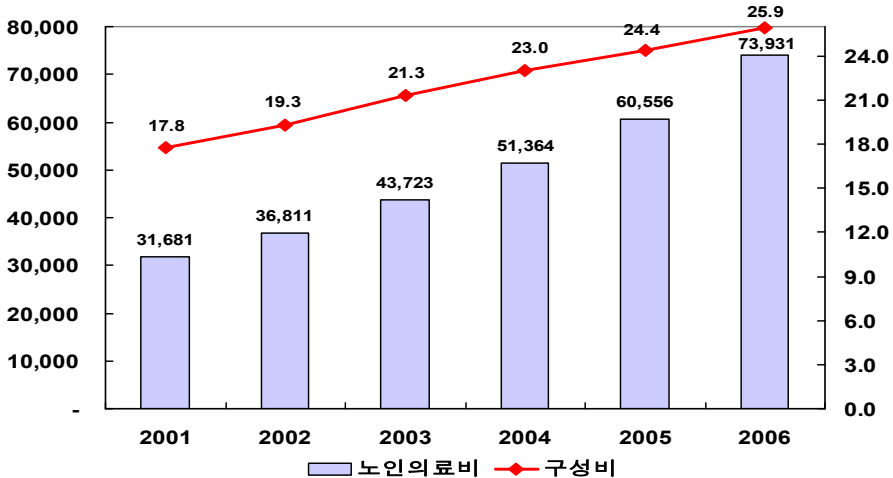
주 : 1) 연금재정은 연금기여액에서 연금지출액을 차감한 금액 비율
 2) 현재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부터 보장되는 급여의 현재가치 비율
 3)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인구고령화의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공적연금 보험료와 연금재정 및 연금부채
 자료 : World Bank Report (2000)에서 재인용

넷째,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는 <그림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총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2001년 17.8%에서 2006년 상반기 25.9%로 급증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절대적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증대와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비용증대의 부담은 전적으로 생산연령인구에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2020년 14.5%, 2030년 20.6%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령사회가 생산인구에 게 주는 부담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7) 2006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 3,93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22.1% 증가하여 전체의료비 증가율 15.2%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2005년의 24.4%에 비해 1.5%p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3> 65세 이상 건강보험 의료비 추이

(단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년도

2. 인구 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 발생구조

고령사회의 도래는 개인의 수명연장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대와 함께 개인, 기업 및 정부에 각기 다른 고령화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다. 먼저 개인에게는 생존리스크⁸⁾, 건강리스크⁹⁾, 자산리스크¹⁰⁾ 등을 발생시키는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제공을 위한 보험료 등이 지출됨으로써 재무리스크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각종 노후보장제도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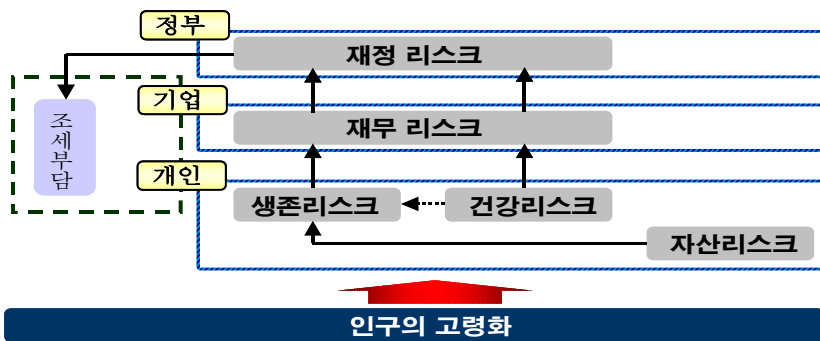
8) 생존리스크는 개인이 예상했던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됨으로써 노후를 위한 수입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이다.

9) 건강리스크는 고연령이 됨에 따라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10) 자산리스크는 개인이 축적한 자산이 경기침체, 금리변동, 물가, 투자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이다.

지 및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이 늘어남으로서 재정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 기업, 정부의 고령화리스크는 개인으로 부터 비롯되어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과 기업이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근로자에게는 생존·건강·자산리스크 등과 같은 고령화 리스크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는 기업, 정부에 각각 재무리스크, 재정리스크로 이전하게 된다.<그림Ⅱ-4>참조)

<그림Ⅱ-4> 고령화의 진전과 고령화 리스크 발생구조



자료 : 오영수, 류건식, 임병인, 김재현,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구, 2005. 8., pp. 133-134.

이들 고령화 관련 리스크는 개인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보장수준을 높이게 되면 개인의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반면 정부의 부담은 완화하는 연관구조를 갖고 있다. 보장수준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부담의 형평성, 부담 대비 급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 더구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개인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보장수준을 높이게 되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은 낮아지나 정부의 부담은 커지는 연관구조를 지니고 있다.¹¹⁾

3.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근로자의 고령화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의 고령화리스크 즉 기업의 재무리스크와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고령화리스크 부담률이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과 정부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표II-5> 개인의 고령화리스크 부담률

현재연령	평균기대여명 (60세 기준)	개인리스크부담률 (%)				
		60세	80세	83세	86세	88세
27세	28.27	20.6	30.7	31.4	32.0	32.4
35세	26.03	13.3	24.8	25.5	26.3	
45세	23.23	17.8	28.7	29.5		

자료 : 오영수의(2005) 및 류건식(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개인의 고령화리스크는 정부의 노후소득대책(생존리스크)과 더불어 노후건강대책(건강리스크)여하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고령화리스크 중 생존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대책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기조 하에서 연금제도의 운용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OECD 주요국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11) 오영수, 류건식, 임병인, 김재현,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구, 2005. 8., pp. 133

단적으로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는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악화이며, 그 이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이라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모두 공적연금 기여자의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의 수는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여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로 현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이 늘고 이는 경제성장의 순기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Ⅳ장(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및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III.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가.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로 분류되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 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사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I-1>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대상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 사학 교원 · 군인	저소득층	빈곤선이하계층
추가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1차안전망	1층	국민연금				
기초안전망	0층	-			경로연금	
					-	기초생활 보장제도

따라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체계는 공적연금제도를 1차 안전망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층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¹³⁾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3층으로는 개인연금가입을 통하여 추가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토록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OECD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의하면 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될 경우 그것이 국가가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상관없이 법정제도(mandatory tiers)로 분류하면서 법정제도를 두개의 층으로 나누고 있으며, 하나는 소득재분배(redistributive)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insurance)부분으로 각 1층 보장과 2층 보장을 형성하게 된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부분은 절대액의 기초소득보장을, 보험부분은 적정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다.

임의제도(voluntary provision)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연금제도를 총칭하는데 여기에는 법정 강제제도와 임의제도라는 큰 체계 내에서 각 연금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고 운영형태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OECD의 연금제도 분류체계는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강제연금제도로서 1층 보장(소득재분배부분, A)과 2층 보장(소득비례부분, B)을 포함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공적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을 대신하는 퇴직연금제도 역시 법정 강제제도(법정퇴직금제도와 임의가입형태)이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2층 보장의 소득비례 사적연금(C)에 해당될 수 있다.

13) 2004년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족의 경우 월 10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2> OECD기준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제·임의여부	보장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임의(Voluntary)연금제도	3층 보장	개인연금 (개인)	D
법정 강제(Mandatory)연금제도	2층 보장 소득비례	퇴직연금 (기업) DB, DC	C
		국민연금 (국가) DB	B
	1층 보장 소득재분배	국민연금 (국가) DB	A

자료 : 방하남,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08.11

즉,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연금형태로 전환한 것인 만큼 기업의 임의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적 퇴직연금과는 달리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의 본래목적도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었던 만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가 향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퇴직금제도는 그간 퇴직 시마다 지급되는 일시금제도 운영되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번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층 보장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임의제도로서 3층보장의 사적연금(D)으로 분류되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특징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수급구조 불균형이라는 내재적 요인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부터 재정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되어 오다 2007년 7월에 와서야 비로소 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골격을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수적(parametric)개혁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표Ⅲ-3>참조).

<표Ⅲ-3> 국민연금법 내용 및 특징

주요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평균소득월액의 9%	좌 동
	소득대체율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 대체율 ¹⁾ 1988~97년 : 70% 1998~2007년: 60%	2008년: 50% 2009~28년: 매년마다 0.5%p 인하 2028년 이후: 40%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내실화 방안	감액노령연금	10~20년 미만 가입자 2.5% 추가감액을 적용 47.5%(‘10년)~92.5%(‘19년)	추가감액을 폐지 50%(10년)~95%(19년)
	조기노령연금	- 정상수급 개시연령 5년전 (현 55세)부터 신청 가능 - 조기수급 1년당 연금급여 5%p 씩 감액	조기수급 1년당 감액을 상향조 정 (5%p→6%p)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재근로 인센티브	소득활동 종사시 연금지급정 지 60세 이후 조기노령연금 적용	소득활동 종사시 지급정지 60세 이후 재직자노령연금 적용, 재가입기간만큼 지급률 인상 (재가입기간 1년당 6% 가산)
	연기금제도	없 음	- 정상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가 수급개시 시점을 연기할 경 우 중액급여 지급 - 가산율: 매 1개월당 0.5%p (1년당 6%p)
	군복무 크레딧	없 음	병역의무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 간 중 6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
	출산 크레딧	없 음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 추가가 입기간 인정(최장50개월)
사각지대 해소방안	기초노령연금 제 도입	없 음	65세 이상 노인의 60%→70%에 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10%(‘28)지급

주 : 1) 중위소득자의 재평가된 평생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 년도 연금월액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년) 재구성

개정된 재정안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방안으로 병역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출산 크레딧 제도,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연령에 따른 지급률 하향조정 및 감액 폭 확대를 통해 조기은퇴 유인을 줄이고,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개선, 급여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재혼 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의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

<표 III-4> 퇴직연금제 유형 및 특징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개념	- 노사가 사전에 급여수준·내용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지급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지급
사외적립	-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수준을 규정 · 책임준비금의 60%이상 적립	-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적립금 운용	- 사용자가 운용지시	- 근로자가 운용지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제시
급여수준 (연금산 정보수)	- 퇴직금과 동일(일시금기준) *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지급 - 근속연수 × (3개월) 평균임금	- 미정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름)
중도인출	- 성격상 인정 안됨	- 일정한 경우 인정(대통령령 규정)
이직시 이전	-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 이직한 회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근로자 개별계좌	- 없음 (사업장별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 있음

둘째,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여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노후 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즉 퇴직금제도 중 사외적립 형태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사내유보 퇴직금제도에 비해 기금의 적립과 운용, 연금수급권, 급여지급형태, 연금 이관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임의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수탁기관 간 1대 1 계약형태를 띠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Ⅲ-5> 개인연금제 유형 및 특징

구 분		구 개인연금제도	신 개인연금제도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급기관		-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 및 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소득 공제	범위	- 연간 납입금액의 40%	- 연간 납입금액의 100%
	한도	- 72만원	- 240만원
이자소득세		- 비과세	- 연금소득세(5%) 부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 이자소득세 부과	- 기타소득세(20%) 부과
5년 이내 중도해지시		- 소득공제 추정 해지시까지 납입금액의 4% (연간 72천원 한도)	- 해지가산세 부과 해지시까지 납입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의 5%
저축 기간	적립기간	- 10년 이상 만55세 이후	- 좌 동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후 5년이상	- 좌 동
저축금액		- 월 100만원 또는 분기300만원	- 좌 동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기타		- 2000. 12월말까지 가입	- 2001. 1. 1일부터 시행

셋째, 우리나라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이란 개인 연금을 도입한 후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를 도입·운용해 오고 있다(<표Ⅲ-5>참조).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상 차이점은 구 개인연금이 TEE방식이었다면 신 개인연금은 EET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소득공제 일부허용) 연금수급 시에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신 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신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를 10%의 두 배인 기타소득세를 20%가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 된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가입의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구조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측면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도의 형평성(equity), 제도의 적정성(adequacy)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측면에서 볼 때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제2차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해 연금재정의 불완전성이 상당 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발생시점을 기존의 2025년경에서 개정 후에는 2035년경으로 약 10년 늦춰질 전망이며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기금고갈시점은 2045년경에서 2060년경으로 약 15년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처럼 법 개정은 급여수준의 인하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급여-보험료 부담상의 구조적

불균형도 상당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0년 가입기준 평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20% 인하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제도시행 초기에 단행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표Ⅲ-6>참조).

<표Ⅲ-6> 국민연금 개정 전·후의 재정전망 (KDI추계)

(단위: 조원, %)

	총수입		총지출		수지		적립금		필요보험료율(%)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2005	30.2 (3.5)	30.2 (3.5)	3.2 (0.4)	3.2 (0.4)	27.0 (3.1)	27.0 (3.1)	173.0 (20.1)	173.0 (20.1)	9.0	9.0
2010	50.7 (4.0)	50.7 (4.0)	8.1 (0.6)	7.6 (0.6)	42.6 (3.3)	43.1 (3.4)	353.7 (27.7)	357.3 (27.9)	9.0	9.0
2015	79.9 (4.3)	80.4 (4.3)	17.6 (1.0)	15.5 (0.8)	62.3 (3.4)	64.9 (3.5)	625.3 (33.8)	638.4 (34.5)	9.0	9.0
2020	117.1 (4.5)	119.1 (4.6)	39.3 (1.5)	30.5 (1.2)	77.8 (3.0)	88.6 (3.4)	988.8 (37.8)	1,031.9 (39.4)	9.0	9.0
2025	160.6 (4.5)	167.8 (4.7)	78.7 (2.2)	57.9 (1.6)	82.0 (2.3)	109.9 (3.1)	1,397.6 (39.2)	1,535.0 (43.1)	9.0	9.0
2030	206.2 (4.4)	225.5 (4.8)	143.2 (3.1)	101.3 (2.2)	63.0 (1.3)	124.2 (2.7)	1,761.8 (37.7)	2,124.1 (45.5)	9.0	9.0
2035	242.1 (4.1)	285.7 (4.8)	236.4 (4.0)	163.5 (2.7)	5.7 (0.1)	122.2 (2.1)	1,924.1 (32.3)	2,748.8 (46.2)	9.0	9.0
2040	259.9 (3.5)	348.3 (4.7)	376.9 (5.0)	258.1 (3.5)	-116.9 (-1.6)	90.2 (1.2)	1,619.6 (21.7)	3,298.9 (44.1)	9.0	9.0
2045	237.3 (2.6)	403.0 (4.3)	553.8 (6.0)	377.3 (4.1)	-316.5 (-3.4)	25.6 (0.3)	478.4 (5.1)	3,613.3 (38.9)	9.0	9.0
2050	234.4 (2.0)	443.6 (3.8)	772.8 (6.7)	524.9 (4.5)	-538.4 (-4.7)	-81.2 (-0.7)	-	3,488.9 (30.2)	29.7	9.0
2055	284.4 (2.0)	454.1 (3.2)	992.2 (6.9)	672.5 (4.7)	-707.8 (-4.9)	-218.4 (-1.5)	-	2,781.5 (19.4)	31.4	9.0
2060	346.4 (1.9)	424.5 (2.4)	1,295.8 (7.3)	876.6 (4.9)	-949.5 (-5.3)	-452.1 (-2.5)	-	1,131.2 (6.3)	33.7	9.0
2065	425.5 (1.9)	425.5 (1.9)	1,671.4 (7.5)	1,128.5 (5.1)	-1,246.0 (-5.6)	-703.0 (-3.2)	-	-	35.4	23.9
2070	525.1 (1.9)	525.1 (1.9)	2,101.1 (7.6)	1,415.3 (5.1)	-1,576.0 (-5.7)	-890.2 (-3.2)	-	-	36.0	24.3

주 :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자료 : 윤석명,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안정화 조치는 기존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하락(2070년 기준 GDP대비 2.5%)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보험료수준간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 보험료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경에 가서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순수 부과방식(PAYG)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차후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자 1인당 보험료율은 현재의 9%수준에서 2065년 23.9%, 2070년에는 24.3%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 차후세대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취약

적정성이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소득대체수준의 적정성은 1층의 국민연금제도뿐 아니라 기업차원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차원의 민간연금 또는 노후대비저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적정노후소득의 대체수준은 각 가입자의 가족구성 형태나 건강상태, 또는 타 소득원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감소정도는 기존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55세의 경우에는 매우 미미한 반면 후세대로 갈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특히 25세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전 소득계층에서 개정 전에 비해 약 30%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중위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인 평균근로자 기준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근로계층(0.5Y)의 경우 법개정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은 40%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사회보험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평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개정 후 소

득대체율이 전 가입기간동안 근로를 할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며, 특히 평균근로자 기준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근로계층(2Y)이 경우에는 소득대체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17%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소득수준별 급여수준 변화

(단위: 천원, 배, %)

	평균근로자 1/3 (1/3Y)		평균근로자 1/2 (0.5Y)		평균근로자 (Y)		평균근로자 2배 (2Y)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연금급여액	2,711	1,926	3,250	2,309	4,868	3,458	5,784	4,109
평생평균소득	3,595	3,595	5,393	5,393	10,786	10,786	23,532	23,532
소득대체율	75.40	53.37	60.27	42.81	45.13	32.06	24.58	17.46
수익비	2.73	1.94	2.18	1.55	1.64	1.16	1.51	1.08
(개정후/개정전)		(71.1)		(71.1)		(70.7)		(71.5)
내부수익율	6.98	5.75	6.18	4.93	5.12	3.85	4.77	3.55

주 : 2008년 당시 25세 남성 독신근로자 기준임

자료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표Ⅲ-8>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입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개정 이전에는 고소득 계층(2Y)의 소득대체율이 33.8%이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후에는 22.5%로 대폭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계층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취약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8> 개정이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¹⁾

상대적 소득수준 ²⁾		가입기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개정 전	0.25	75.0	93.8	100.0	100.0	100.0
	0.5	45.0	56.3	67.5	78.8	90.0
	1	30.0	37.5	45.0	52.5	60.0
	2	22.5	28.1	33.8	39.4	45.0
	3	20.0	25.0	30.0	35.0	40.0
개정 후 ³⁾	0.25	50.5	62.5	75.0	87.5	100.0
	0.5	30.0	37.5	45.0	52.5	60.0
	1	20.0	25.0	30.0	35.0	40.0
	2	15.0	18.8	22.5	26.3	30.0
	3	13.3	16.7	20.0	23.3	26.7

주 : 1)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보수를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보수를 B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의 1년 기본 연금액은 개정 전은 $1.8(A+B)(1+0.05y)$ 이며, 개정 후는 $1.2(A+B)(1+0.05y)$ 임 (y는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연수).

2)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월 평균보수/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3) 2007년 7월 23일 공포. 조정기간을 거쳐 2028년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 음영으로 표시된 부문은 OECD 강제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에 미달하는 대상

자료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처럼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한 급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추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 예상지만 평균근로소득이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다.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세계은행에서는 2000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근로계층 간·피용자와 자영업자 간의 기여율과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간의 연계가 거의 전무하여 공적연금의 보편적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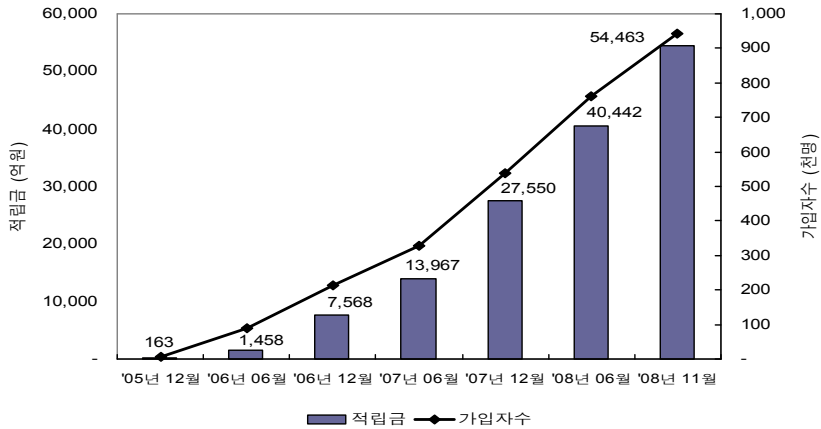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로의 노사공동기여율인 17.3%는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퇴직 후 노후소득원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비용 대비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민간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제도와 민간제도 간의 연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라. 사적연금 역할 및 기능의 한계

1) 퇴직연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2008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그림Ⅲ-1> 참조), 5조 4,4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94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으로는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비중은 은행(2조 6,370억) 48.4%, 생보(1조 8,845억) 34.6%, 증권(5,759억) 10.6%, 손보(3,489억)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 퇴직연금제도 운용실태



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3년 종합평가 및 과제, KIRI Weekly, 2009.2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표III-9>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소기업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68.7%가 DB형을, 중기업의 50.8%가 DC형을, 소기업의 50.4%가 IRA 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사규모별 퇴직연금 체결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소기업중심의 계약체결과 IRA기업형 중심의 계약체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III-9> 회사규모별 계약체결실태

(단위: 건수, %)

사업장 규모	DB	DC	IRA 기업형	합계
소기업 (20인 이하)	6,109 (16.3)	12,465 (33.3)	18,840 (50.4)	37,414
중기업 (20 ~ 300인)	4,620 (49.2)	4,764 (50.8)	-	9,384
대기업 (300인 이상)	340 (68.7)	155 (31.3)	-	495
합계	11,609 (23.4)	17,834 (36.8)	18,840 (39.8)	47,293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특히 금융권역별 적립금 운용실태를 보면 원리금보장형은 보험, 은행, 증권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은 2006년 12월 이후 담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표 III-10>참조).

<표 III-10>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실태

(단위: 억)

구 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1
원리금보장형	은행	25	1,975	7,671	21,244
	보험	46	3,549	11,024	21,111
	증권	1	120	585	1,719
원리금보장형 합계		72 (44.2%)	5,644(74.6%)	19,280(70.0%)	44,073 (80.9%)
실적배당형	은행	4	336	1,962	3,262
	보험	1	61	1,162	1,079
	증권	5	392	1,442	2,639
실적배당형 합계		10 (6.4%)	789 (10.4%)	4,566 (16.6%)	6,980 (12.8%)
기타	은행	70	550	1,539	1,865
	보험	-	481	1,579	144
	증권	10	103	587	1,401
기타 합계		80 (49.4%)	1,134 (15.0%)	3,705 (13.4%)	3,410 (6.3%)
총합		162	7,567	27,551	54,463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이상과 같은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외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 수급권 보호장치의 미흡, 연금전환대책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① 자산운용규제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량한 관리자의무에 입각한 질적 규제(자율규제)보다 연금운용의 안전성제고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Ⅲ-11>참조).

이러한 양적규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 수익률의 저하 등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규제를 완화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였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근로자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하여 주식, 부동산,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엄격하게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표Ⅲ-11>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국 가		주 식	부동산	채 권	펀 드	대 출
한국	DB	30%	50%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50%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 투자금지 혼합형 : 투자금지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미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호주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기업주 자산 5% 이내)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상장 : 30% 비상장 : 10%	25%	50%	50%	50%
일본		법령상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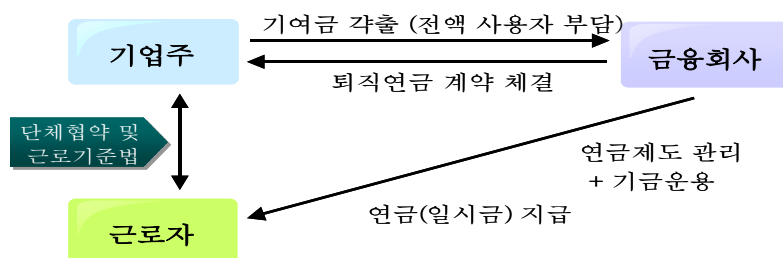
자료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보험연구원, 2008

이에 반해 영국, 미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는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같은

선관주의(prudent men rule)에 입각한 질적규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 등 대륙국가의 경우는 연금운용의 안전성제고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의 경우 대체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양적규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질적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지배구조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투자지식 부족, 신탁제도의 미발달,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모두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III-2>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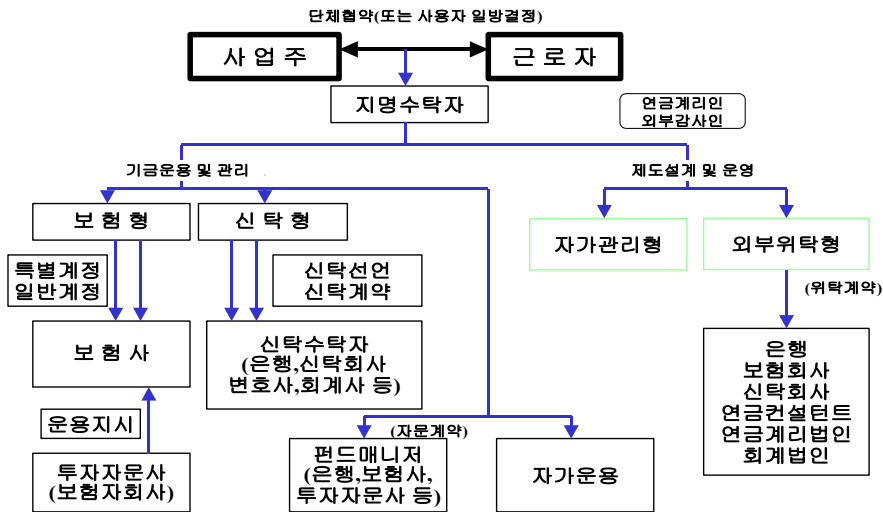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그러나 이러한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하여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자칫 금융회사와 사용자 간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고 근로자와의 이익상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노사 간의 신뢰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기금형 보다 금융시장 발달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모든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멕시코 등은 회사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도설계 및 기금운용에 참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와 달리 제도운용, 기금운용,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외부감사 등이 별도로 전문화된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림 III-3>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영미)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특히 영국에서는 모든 금융업의 겸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기업은 최적의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퇴직연금 참여기관들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수급권보호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 도입)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장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III-12>참조).

<표 III-12>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근퇴법	제 11조	임금채권보장법 8조
보상범위	최근 3년분에 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제도 적용
특징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연금지급급부공사 일부 역할
영향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방지 → 근로자 수급권 미흡	

자료 :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2008.11에 의거 작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이외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불하여 연금지급 보증과 관련된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협의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3> 선진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비교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운영방식	Take-over (예외: 캐나다)	Buy-out (예외: 스위스)
지급보장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장으로 안정성 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운용의 독립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독립성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	원칙적으로 독립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관련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결정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과제, KDI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다만, 협의의 수급권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할 지라도,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근로자에게 완전한 수급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에 의한 수급권 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도산 시,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의해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의 가입을 임의가입방식형태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인수(Take-Out)하는 방식으로, 독일, 스웨덴 등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대체하는 국가에서는 민간 기구에서 판매(Buy-Out)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④ 연금전환대책측면에서 볼 때 <표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금세제 혜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제도 존재, 중간정산제도의 제한적 허용, 과감한 중도인출제의 허용, 개인퇴직계좌의 기능 미약 등은 퇴직연금 전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Ⅲ-14>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 (한국)

구 분	세 부 내 용
연금세제	퇴직급여 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기업의 퇴직급여 총당금 손비한도 (현재 35% → 2009년 이후 30%)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 기존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5%
중간정산제	허용
중도인출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 허용
퇴직금 일시금수령	아무런 제약 없음
법정퇴직금제	높은 만족도 유지 (설문조사의 약 56%)
개인퇴직계좌 (IRA)	기능 미흡 (근로자에 국한)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이에 반해 호주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의 부여로 퇴직연금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표Ⅲ-15>참조).

<표Ⅲ-15>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 (선진국)

구 분	세 부 내 용
연금세제	호주: 퇴직연금 기여액에 대해 최저세율(15%) 적용 미국: 2007년 기준 1만 5,500달러까지 세제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중도인출제	일본: 중도인출 불가 미국: 사망, 상해퇴직 등 예외적으로 인정 (임의 중도 인출시 10% 패널티세 부과)
퇴직금 일시금수령	대부분 퇴직일시금 수령을 제한
법정퇴직금제	미존재
개인퇴직계좌 (IRA)	전국민, 자영업자까지 확대 (개인연금의 기능 담당)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2) 개인연금

우리나라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은 2006년 말 현재 4조 5,214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자산성장률은 2006년 69%로 높은 수준이나 자산성장률은 점점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개인연금의 자산성장률은 2002년 149.1%, 2003년 89.2%, 2004년 73.4%, 2005년 67.8%, 2006년 69.2%로 나타나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Ⅲ-16>참조).

<표Ⅲ-16> 개인연금 자산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원, %)

	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	
	자산	성장률	자산	성장률
2001	189,263		1,948	
2002	209,727	10.8	4,852	149.1
2003	230,994	10.1	9,179	89.2
2004	245,119	6.1	15,919	73.4
2005	253,150	3.3	26,719	67.8
2006	259,955	2.7	45,214	69.2

주 : 은행은 말잔,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증권은 설정잔액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 생명보험); 자산운용협회(증권)

특히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납입금 및 증감률 추이를 보면(<표Ⅲ-16>참조), 개인연금은 200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 개인 연금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신 개인연금 유지율면에서는 2006년까지 유지율(신 개인연금 유지율 = 2006년 말 보유계약건수/2001~2006년 신계약건수합계)은 95%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처럼 유지율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소득공제추징과 납입금액의 5%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는 불이익 부여, 연금세제의 변화(TEE과세방식에서 EET방식으로의 전환)로 연금가입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구개인연금 유지율은 28.6%에 불과, 은행, 손해보험, 투신운용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연금보험 신계약대비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비중은 1/4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기능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신개인 연금의 2006년 신계약건수 90,211(25.5%)건, 세제비적 연금보험의 2006년 신계약건수 263,574건으로 비중 면에서는 매년 연금보험 신계약의 3/4이상을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금보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보다 세제 비적격 연금의 판매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개인연금 납입금 및 성장률(은행 및 생명보험사)

(백만원, %)

	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	
	납입금	성장률	납입금	성장률
2001	1,852,510		94,496	
2002	2,444,224	31.9	192,085	103.3
2003	2,229,307	-8.8	299,528	55.9
2004	2,127,406	-4.6	486,861	62.5
2005	1,752,787	-17.6	891,515	83.1
2006	1,519,039	-13.3	1,586,805	78.0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 생명보험); 자산운용협회(증권)

이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기능제고 방안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인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25% 이상(2007년기준 미국 36%, 일본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려는 계층에게는 신 개인연금의 연금납입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의 유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있을 수 있으나, 한 개의 연금만을 고르게 되면 상속에도 이용가능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고소득계층보다 오히려 저소득계층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

로 가입유인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 등의 경우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전혀 없어 장기적으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에 대한 판매보수가 세제적격보다 세제비적격 상품이 더 높아서 금융기관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판매 유인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겨우 정착되기 시작한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보다 건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성숙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사회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가능성 상의 문제뿐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 문제,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노동자의 조기은퇴문제도 새로이 부각될 것이며,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방안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의 급여인하조치는 국가차원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축소를 의미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데 이어 지난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명목상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적연금시장의 기능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선 세제혜택 등 가입유인의 부족, 수급권보호 및 건전성 규제 미비성, 제도이동권의 보장미흡 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적연금시장을 조속히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IV.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비교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

가. OECD

OECD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하여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적연금체계 유지를 위한 국민의 높은 보험료 부담, 높은 보험료로 인한 다음 세대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 동일세대간 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등을 지적하였다.

<표Ⅳ-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OECD 제시안

소득보장	구성내용	형태
4층	개인연금	임의가입 민간운영
3층	퇴직연금	강제적용 법정퇴직금제 폐지, 퇴직연금제 적용 목표소득대체율: 20%
2층	소득비례국민연금	강제적용, 국가운영 완전적립, 확정급여 목표소득대체율: 20%
1층	기초국민연금	강제적용, 국가운영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 목표소득대체율: 20%

즉 OECD는 <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즉 소득재분배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부분을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

등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 운영을 권고하였다.

나. World Bank

World Bank는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다층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기업 단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즉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축소와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층보장체계를 유지하되, 국가별 특성(경제수준 및 금융시장 발달 정도)을 반영한 다층보장체계 구축 및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0층의 공적부조제도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⁵⁾

구체적으로는 0층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을 설정하고 재정은 조세방식으로 하되 소득조사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층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 대체를 목표로 본인의 보험료 기여에 기초하되,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방식의 1층 공적연금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2층에서는 개인계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강제 적용의 공적연금제도를 제안하였다. 3층에서는 임의가입방식의 퇴직 또

14) 일부에서는 World Bank의 연금 개혁모형이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이며, 기존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5)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는 개인연금제도로 부분적립하거나 완전 적립식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4층에서는 비공식 적인 사적지원이나 기타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의료혜택 등)를 통한 추가적인 임의보장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표Ⅳ-2> World Bank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5)

층	대 상			분 류 기 준		
	빈곤층	비공식 제도	공식 제도	내 용	강제 여부	재원
0	✓			기초연금: 공적부조방식으로 운영	전국민 또는 자격자	정부예산 일반재정
1			✓	공적연금제도: 공적부문에서 운영 (DB 또는 NDC)	강제	보험료, 일부적립금
2			✓	퇴직 또는 개인연금 (완전적립방식 DB 또는 DC)	강제	금융자산
3		✓	✓	퇴직 또는 개인연금	임의	금융자산
4	✓	✓		비공식적 사회지원 또는 공식적 사회보장제도	임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

자료 : The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다.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다층의 공사연금체계를 두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ILO는 <표Ⅳ-3>에서 보는 것처럼 4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으나 1층 보장이 사회안전망 성격의 최저소득보장제도에 이어 연금만을 상정할 경우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제 ILO에서 설정하고 있는 1층 보장은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0층 보장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LO의 첫 번째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최소소득보장(Minimum Anti-poverty Pension),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PAYG Defined Benefit Pension),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완하는 강제확정각출형 퇴직연금제도(Mandatory Occupational

Pension), 임의 적용하는 개인연금제도(Private Individual Pension)의 4층 체계이다.

<표 IV-3> ILO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0년)

1층: 최저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자산조사		
최소소득보장 연금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재원조달		
2층: 기초보장제도 (정부운용, 강제적용, 확정급여)	또 는	2층: 기초보장제도 (정부운용, 강제적용, 명목확정각출제도)
강제적용원칙의 공적부과방식 생애평균소득의 40~50%의 임금대체율 보장 확정급여방식 연금급여를 물가에 연동		강제적용원칙의 공적부과방식 명목확정각출(NDC) 방식 기대여명을 연금급여에 연계
3층: 추가 소득비례연금		
민간운용, 강제적용, 확정각출)		
강제적용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설정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4층: 추가 소득 비례연금		
(민간운용, 임의적용, 확정각출)		
자발적 가입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철폐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자료 : Colin, Gillion(1997), ILO(2000), 윤석명(2001)에서 재인용

ILO가 제시한 두 번째 방식은 다른 사항은 첫 번째 대안과 동일하나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을 명목 확정각출(Nominal Defined Contribution)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명목확정각출 방식은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는 공적연금 재정의 불안정과 과도한 세대 간

불평등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급여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한 제도이다.

2.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가. 연금제도 형태

OECD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연금제도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OECD에 의하면 연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1층)과 보험기능(2층)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요소는 연금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부분이며, 보험요소는 근로기간 동안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은퇴 이후의 목표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부분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임의 연금(voluntary pension)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하에서 제공자(정부 또는 민간), 급부결정방식(DB 또는 DC형) 등에 따라 추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표IV-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국가는 노후 빈곤문제 방지를 위해 1층 또는 소득재분배제도로 불리우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되며, 기초연금제도(basic pension scheme), 자산 조사제도(Resource-tested plan), 최저보증연금(Minimum pension) 등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제도로 급부가 과거 급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퇴자에게 동일하게 정액(flat rate) 급부를 지급하거나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로 13개 국가에서 기초연금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제외한 1층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형태는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산조사 제도는 부유한 은퇴자의 급부를 감소시키고 빈곤계층에 속한 연금 수급자에게 더 높은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부액은 ① 소득만으로 ②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OECD 16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는 공적사회부조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산조사 제도와 유사하지만 수급권의 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최저보증연금제도는 특정수준 이하로 연금급부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자산조사제도와는 달리 최저보증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소득만이 고려되며, 기타소득 및 자산은 고려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1층과 비교하여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금제도의 2층 부분에서는 절대적 생활수준인 빈곤의 방지가 아닌 은퇴이전의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자에게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OECD 16개 국가는 국가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기여년수 및 개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는 DB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OECD 4개 국가는 기여액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급부를 차등 지급하는 점수제도(points scheme)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는 매 각출연도마다 소득에 기초한 연금점수(pension points)를 획득하고, 은퇴 후에는 이러한 연금점수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는 민간형태의 DB형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기여율, 최저수익률, 축적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금전환율(annuity rate)을 설정하고 있다.

<표 IV-4> OECD 국가의 연금제도 형태

	1층			2층	
	보편적 제도적용, 소득재분배			강제적용, 보험기능	
	공적			공적	사적
	자산조사	기초연금	최저보증연금	유형	유형
호주	✓			DC	
오스트리아	✓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체코	✓	✓	✓	DB	
덴마크	✓	✓		DC	
핀란드			✓	DB	
프랑스	✓		✓	DB+points	
독일	✓			points	
그리스	✓		✓	DB	
헝가리				DB	DB
아이슬란드	✓	✓		DB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NDC	
일본		✓		DB	
한국		✓		DB	
룩셈부르크	✓	✓	✓	DB	
멕시코		✓	✓	DC	
네덜란드		✓		DB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points	DC
폴란드			✓	NDC	DC
포르투갈			✓	DB	
슬로바키아			✓	points	DC
스페인			✓	DB	
스웨덴			✓	NDC	DB+DC
스위스	✓		✓	DB	DB
터키			✓	DB	
영국	✓	✓	✓	DB	
미국	✓			DB	

주 : NDC(notional accounts): 명목 확정기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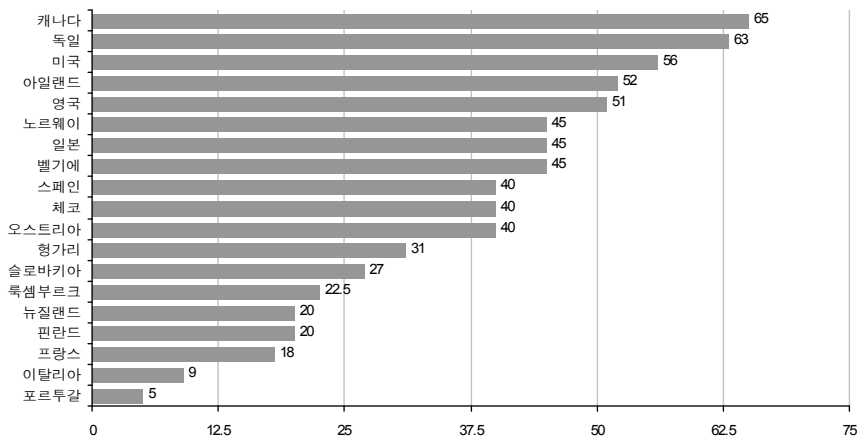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연금자산 누적액 및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소득이 결정되는 DC형의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는 고용주의 관여 없이 근로자가 연금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호주는 고용주가 관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DB형 및 DC형 이외에도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은 명목 확정기여형(NDC: notional-accounts scheme)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로 은퇴 이후 누적된 자산은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연금 가입율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임의연금의 가입율이 전체근로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대체로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IV-1>참조).

<그림 IV-1> OECD 주요국의 임의 사적연금 가입율



주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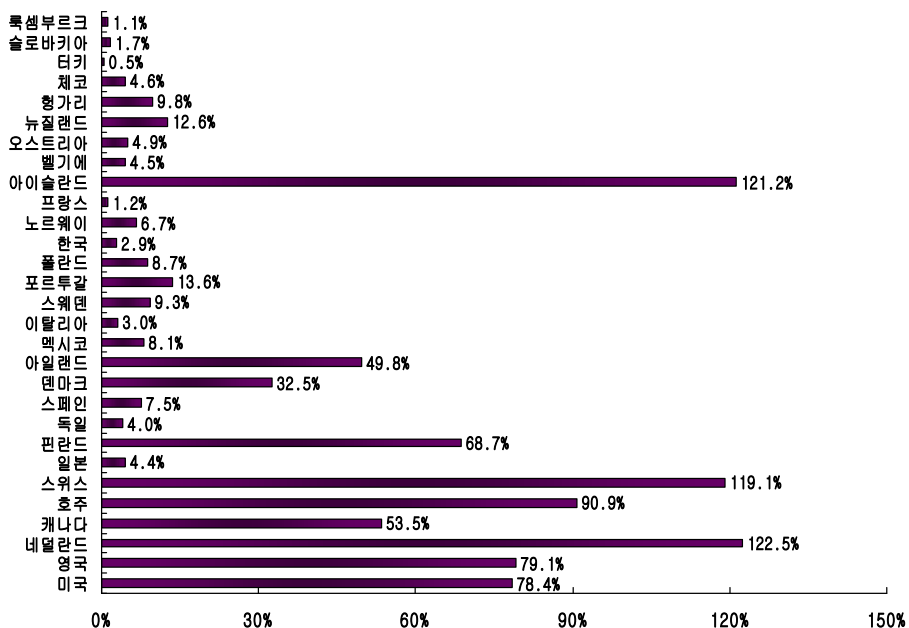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이에 반해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0% 미만의 근로자가 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국의 임의 사적연금(voluntary private pension)의 가입율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연기금자산 비율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연기금자산 비율이 2.9%에 불과하여 OECD 30개국중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 IV-2>참조).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은 연기금자산규모가 GDP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폴란드, 헝가리 등은 GDP 대비 연기금자산규모가 10%내외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 IV-2>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2007년기준)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운용전략, 2008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08.9

<그림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 등은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이 1% 내외의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아이슬란드는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이 2007년 기준으로 121.2%에 이르고 있으며 스위스는 119.1%, 네덜란드는 122.5%를 차지하여 연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연기금자산비율이 핀란드는 68.7%, 호주는 90.9%, 영국은 79.1%, 미국은 78.4%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연기금 자산비율 역시 우리나라의 연기금 자산비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라. 연금가입 강제성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라 국가별로 가입을 강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홍콩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완전대체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국가 모두 연금개혁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확정기여형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부분대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연기금이 대부분 산업별로 설치된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소득비례연금은 법정퇴직연금으로 각 산업별로 관리한다. 더욱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하므로 가입률이 100%일지라도 축적된 기금액은 미미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하므로 임의 가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발달은 미미한 편이다.

<표 IV-5> 퇴직연금 가입 강제성

국 가	강제가입	임의가입수준		
		상	중	하
오스트레일리아	1992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덴마크	1964/1985			
핀란드	1956/1985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1998			
아이슬란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1997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2006			
폴란드	1999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2005			
스페인				✓
스웨덴	2000			
터키				✓
영국			✓	
미국			✓	

주 : 2006년 8월 현재기준임.

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
Insurance Business Report, 2008

미국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차원의 최소한의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은 기업주의 자발적 사항으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기능이 강조된다. 영국, 일본도 사회안전망 차

원의 최소한의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임의 가입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가입시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하는 제도(적용제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개인연금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는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이 커서 가입률이 낮고, 인센티브로서의 기능도 미미한 실정이다.

마. 연금 운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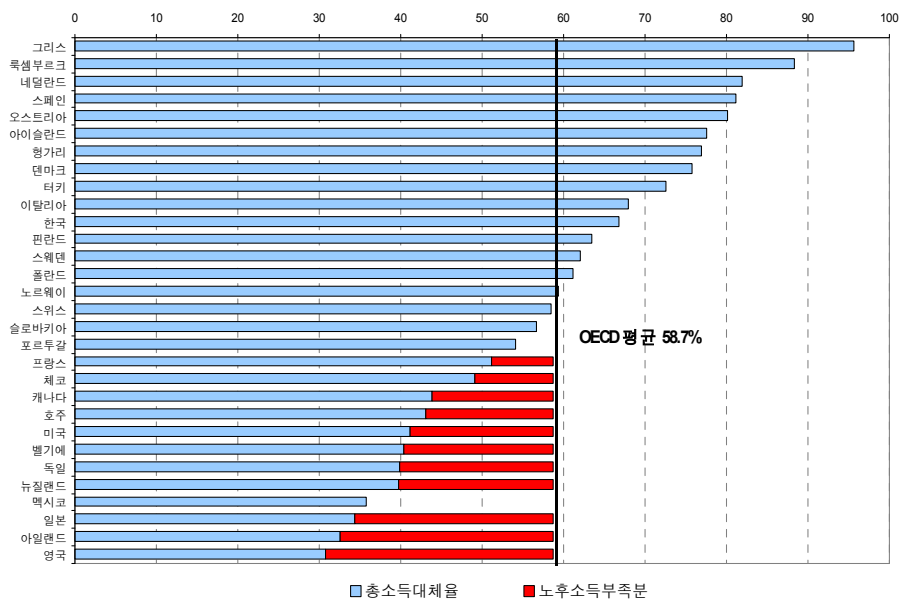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및 스웨덴(최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은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한 스위스, 헝가리 등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급불능에 처한 동유럽(EECA)국가들도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임금,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구축목적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으며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도출하는 데에는 사실상 각 나라마다 경제개발의 단계가 다르고 사회보장체계 및 문화가 달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ILO는 30년 가입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40%~45%에 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명목적 소득 대체율과는 별도로 경험상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사연금에 의한 적정수준의 총 노후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다. World Bank가 세계각국의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층 보장(공적연금)의 경우 약 30%, 2층 보장(퇴직연금)에서는 약 30%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의한 총 소득대체율은 약 60%수준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 IV-3>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 부족분¹⁶⁾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실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자에 대한 총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소득대체율은 31%(영국) ~

16) 노후소득부족분(retirement savings gap)은 각국의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과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

96%(그리스)의 범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소득대체율 평균은 58.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6> OECD국가의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0.5배)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배)	평균소득층
영국	53.4	17	30.8
아일랜드	65	16.2	32.5
일본	47.8	27.2	34.4
멕시코	52.8	33.6	35.8
뉴질랜드	79.5	19.9	39.7
독일	39.9	30	39.9
벨기에	57.3	23.5	40.4
미국	55.2	32.1	41.2
호주	70.7	29.2	43.1
캐나다	75.4	22.2	43.9
체코	78.8	28.9	49.1
프랑스	63.8	44.7	51.2
포르투갈	70.4	52.7	54.1
슬로바키아	56.7	56.7	56.7
스위스	62.5	30.5	58.4
OECD	73.0	49.2	58.7
노르웨이	66.4	42.7	59.3
폴란드	61.2	61.2	61.2
스웨덴	79.1	66.3	62.1
핀란드	71.3	63.4	63.4
이탈리아	67.9	67.9	67.9
터키	72.5	72.5	72.5
덴마크	119.6	57.1	75.8
헝가리	76.9	76.9	76.9
아이슬란드	109.9	72.9	77.5
오스트리아	80.1	58.8	80.1
스페인	81.2	67.1	81.2
네덜란드	80.6	82.6	81.9
룩셈부르크	99.8	82.5	88.3
그리스	95.7	95.7	95.7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주요 영어권 국가(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와 유럽 대륙국(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총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총소득대체율이 30.8%로 나타나, OECD 평균소득 대체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통해 28%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의 1/3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이 53.4%, 평균소득층이 30.8%, 고소득층이 17.0%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는 영국과 달리 저소득층, 고소득층, 평균소득층 모두 95.7%의 총 소득대체율을 보여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순소득대체율¹⁷⁾을 기준으로 할 때 OECD평균은 저소득층이 83.2%, 고소득층이 65.5%, 평균소득층이 69.7%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득층의 순소득대체율은 아일랜드 38.5%, 일본 39.2% 등이 가장 낮고 영국 41.1%, 미국 52.4%, 호주 56.4%, 독일 58.0%, 프랑스 63.1%, 스웨덴 64.0%, 이탈리아 77.9%, 스페인 84.5%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소득대체율은 세후를 기준으로 대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총소득대체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OECD 주요 11개국의 공적연금제도하에서의 평균소득자의 총소득대체율은 40.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연금을 통해 OECD 평균 소득대체율 대비 부족분(노후소득부족분; 18.1%)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출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금개시연령(normal pension age)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65세이다.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20세로 가정함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개인의 연금 가입기간은 40 ~ 47년으로 나타나게 된다(<표IV-7>참조).

17) 순소득대체율은 세후의 은퇴전 총소득에 대한 대체율을 의미

<표 IV-7> 노후소득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험요율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노후소득 부족분	연금 개시연령	연금 가입기간	누적 연금자산	연금 승수	요구 보험요율
호주	43.1%	15.6%	65	45	64.3	16.5	4.0%
벨기에	40.4%	18.3%	65	45	64.3	16.4	4.7%
캐나다	43.9%	14.8%	65	45	64.3	16.4	3.8%
체코	49.1%	9.6%	63	43	60.4	16.6	2.6%
프랑스	51.2%	7.5%	60	40	54.8	19.3	2.6%
독일	39.9%	18.8%	65	45	64.3	16.0	4.7%
아일랜드	32.5%	26.2%	65	45	64.3	15.7	6.4%
일본	34.4%	24.3%	65	45	64.3	17.6	6.7%
뉴질랜드	39.7%	19.0%	65	45	64.3	16.2	4.8%
영국	30.8%	27.9%	65	45	64.3	16.0	6.9%
미국	41.2%	17.5%	67	47	68.3	15.3	3.9%

주 : 1) 임금상승률은 2%, 투자수익율은 3.5%, 노동시장진입연령은 20세로 가정함

2) $K = e^{rT} \frac{e^{(g-r)T} - 1}{g - r}$, K : 연금자산, g : 임금상승률, r : 투자수익률, T : 각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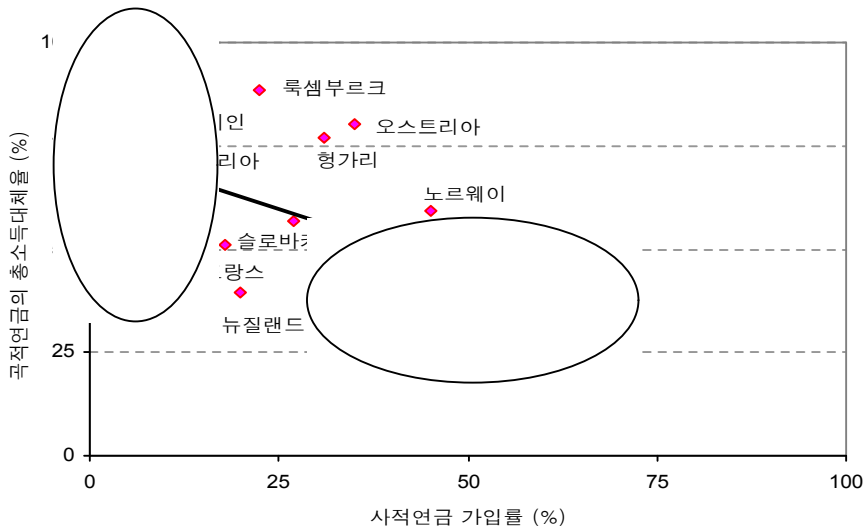
3) 요구보험요율 = (노후소득부족분/누적연금자산)×연금승수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표 IV-7>에서 단위 각출금에 대한 은퇴시점의 누적연금자산을 통해 가입기간(contribution period)에 따라 누적 연금자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45년 동안 연금 불입 후 은퇴시 연금 누적 자산은 복리효과로 인하여 연간 각출금의 64.3배에 이르게 되는데, 연금개시연령 및 기대수명은 연금 지급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후 소득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적연금 가입 규모 산출을 위해 연금개시연령과 기대여명 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승수(annuity factor)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후소득 부족비율이 가장 큰 영국보다는 4% 낮게 확인되고 있으나, 평균 기대수명은 더 크기 때문에 영국에 비하여 연금승수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후소득부족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연령이 60세에 이르고, 기대수명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연금 승수는 가

장 높게 나타나 65세 이상의 퇴직연령을 보유한 타 국가와 비교시 요구 보험
요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4>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다음으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의 가입률간의 관계를 <그림 IV-4>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의 가입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및 핀란드, 폴란드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의 평균이 OECD 평균(59%)을 상회하는 71%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권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및 벨기에, 체코, 독일, 일본의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평균 38%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반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¹⁸⁾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공사연금 역할 분담 모형,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은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역할 관계에 따라 ① 국민연금 완전대체형, ② 국민연금의 부분대체형, ③ 국민연금의 보완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역할을 할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크고, 보완역할을 할 경우 유능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완전대체, 국민연금의 부분대체 형태를 띠고 있는 역할분담체계에서는 사적연금의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의 보완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연금 역할분담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경우 공적연금 중심형, 공적연금 대체형, 공사연금조화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적연금 중심형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사적연금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 대체형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이 대체하는 형태로, 그 방식에 따라 ①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 ②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형, ③ 단체협약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분대체형 ④ 적용제외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은 호주, 홍콩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완전 대체하는 방식인데 반해,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형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일부분을 법정 퇴직연금 형태로 부분 대체하는 방식으로 스위스,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부분대체형은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행하는 형태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적용제외형은 일본, 영국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셋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형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사적연금의 가입이 세제혜택 등으로 자발적으로 유도

18) 여기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사연금 역할분담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되는 형태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상과 같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모형은 모형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담모형이 우수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특성 및 사회보장구조의 특성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연금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최근 선진국의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체계를 볼 때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 등으로 보완형에서 대체형으로의 전환가속화, 보완형 자체속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가 재구축되고 있다.

1) 공적연금 중심형

공적연금 중심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낮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공적기초연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부조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공적소득 비례연금에 거의 전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5년 가입기준 70%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에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퇴직이후에도 퇴직전과 같은 생활수준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퇴직연금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연금제도가 정부보조로 운영되며 소득조사를 하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총급여의 6.91%를 기업주 전액부담으로 각출하여 적립한 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제도(severance pay)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주가 사적연금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운영을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민간에게 완전 위탁시키는 형태로서 호주, 홍콩, 칠레 등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 공적연금제도는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소득비례부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 민간부분에 완전 위탁시키고, 이는 법정 강제부분(compulsory)과 단체협약에 의한 추가부분(voluntary)으로 구성되고 있다.

3) 소득비례부분의 강제 부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강제 부분대체형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중 일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로는 스위스와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스위스의 경우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대체하는 부분과 자발적인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완전적립 방식을 적용하며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지급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소득비례 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을 적용하나 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부분대체하는 법정 퇴직연금과 자발적 퇴직연금이 있으나, 자발적 퇴직연금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림 IV-5> 프랑스의 연금체계

1 층				2 층			3 층
3층: 없음				임의보충연금			임의 개인연금: PPESVR
2층: 소득비례연금/ 보충형제도 CRNPAC, IRCANTEC, CNAVPL, CNBF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보조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조: 주택 저축 및 생명보험 PEIR
ARRCO, AGRIC	CANCAVA	농민 연금	CNRA CL, SNCF	민간 부분	정부 부분	농민 부분	
1층: 기초연금				강제퇴직연금: 없음			강제민영연금: 없음
민간 부분 보조	직 업 보 조	농 업 보 조	공 직 보 조				
공적부조: 노령 (minimum vieillesse)							

자료 : Ellen, Karen, and Isabell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06

4) 단체협약에 따른 사적연금 부분대체형

퇴직연금 가입이 노사협약에 따른 자발적 제도이나, 산업별 노사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지는 준강제적 퇴직연금 형태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되는 퇴직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의 대체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퇴직연금이 소득비례부문을 담당하지만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최저보장연금(GP: guaranteed pension), 부과식 확정기여연금(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사적연금위탁 개인계정(PP: premium pension)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과 단체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공적연금의 적용제외형

적용제외형(contracting-out)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료의 일정부분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로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제외형을 활용할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운용에 따른 효율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소득비례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적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V-6> 영국의 연금체계

1 층	2 층	3 층
3층: 없음	임의퇴직연금	임의 개인연금
2층: 국가소득비례연금(SERPS: 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1978 ~ 2002.4) 국가이충연금(SSP: State Second Pension; 2002 ~) 근로자 자영업자, 농부, 공무원	Stakeholder Pensions: 사업주의 의무제공 노동자 및 자영업자 임의 가입	
1층: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근로자 자영업자 농부 공무원	SSP를 대체한 사적연금(확정기여 또는 확정각출형: COSRS, COMBS, COHS, COMPS)에 대하여 적용제외	SERPS 또는 SSP를 대체한 개인연금에 대한 적용제외
자산조사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보조 주택급여, 지방세급여, 겨울난방비 (Pension Credit: 2003 ~ , 최저소득보장(MIG): 2003년 이전)
--

자료 : Ellen, Karen, and Isabell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06

6) 공사연금 조화형

미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과 자발적인 사적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기초연금(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자산/소득조사방식으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며, 소득비례연금(OASDI)은 보험료 방식으로 피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6.2%를 각출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 동기유발제도로써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을 최소

화하고 퇴직연금으로 사회보장을 확충하기 보다는 유능한 근로자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복지제도로 활용해 왔으나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¹⁹⁾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공적연금의 역할이 미약한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적 시스템(market based model)에서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비중이 큰 유럽의 복지국가(welfare model)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칠레 등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으로 완전대체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북유럽국가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부분대체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의 하나인 인센티브제도로써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인 나라들에서도 국가의 각종세제 인센티브를 통하여 퇴직연금의 공적인 기능을 지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표 IV-8> 및 <표 IV-9>참조).

19) 방하남,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분담, 한국개발연구원, 2005. 12., PP.195-203.

<표 IV-8>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1)²⁰⁾

(민간부문 근로소득자 기준)

국 가 명	연금지급 GDP	공 적 연 금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 실제 ¹⁾ 산식 ²⁾	소득 상한액 ³⁾	구 상 ⁴⁾	가입율 ⁵⁾	가입방식
호주	2.6	30	41	n.a.	92	강제
캐나다	5.2	33	52	Yes	48	임의
오스트리아	8.8	40	80	Yes	11	임의
덴마크	6.8	40	56	n.a.	80	단체협약
핀란드	11.5	65	60	n.a.	100	단체협약
프랑스	10.6	56	65	n.a.	100	강제
독일	11.1	46	55	Yes	42	임의
이탈리아	13.3	49	80	No	5	임의
일본	6.6	54	52	Yes	50	임의
네덜란드	6.0	39	46	Yes	83	단체협약
스페인	10.0	34	100	Yes	15	임의
스웨덴	9.4	n.a.	74	No	90	단체협약
스위스	6.7	n.a.	49	Yes	90	강제
영국	4.5	23	50	Yes	50	임의
미국	4.1	30	56	Yes	46	임의

- 주 : 1) 공적연금 실제 소득대체율 = 평균연금지급액/평균소득액
 2) 산식상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적용되는 연금제도에 20세에 참여해서 해당 제도의 적격퇴직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의 가상 소득대체율임.
 3) 공적연금 소득상한액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최고 소득기준의 적용 여부임.
 4) 이탈리아는 구제도, 호주 및 스웨덴은 신제도 기준임. 표에서 보험료+정부보조는 연금제정의 부족분을 정부 일반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를 말함.
 5)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을 법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구성 항목에 포함.

20) Bertelsmann Foundation, "International Reform Monitor: Social Policy Labour Market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Today's Survey, April 2002 및 Andre Laboul,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에서 발췌 정리

<표 IV-9>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II)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제도 형태 (DB형/DC형)	퇴직연금 기능
미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스웨덴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보완
프랑스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명목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국민연금(기초연금)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네덜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강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금+퇴직연금(임의)	DC형	공적연금 보완

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 Insurance Business Report, 2008

구조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대체로 OECD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연금 적용계층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이룩하는 동시에 예견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은퇴 전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 후에 적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 얼마인지, 즉 적정(목표)소득 대체율과 우리나라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효과(소득대체율 수준)는 얼마나 되는지, 실질(예상)소득대체율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적정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대체율개념을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가구소비 함수를 이용하여, 은퇴이전의 소득수준 대비 은퇴이후의 소비수준 비율을 이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text{적정소득대체율} = \frac{\text{은퇴 후 소비 수준}}{\text{은퇴 전 소득 수준}}$$

둘째,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근로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감안할 때 표준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로 보았으며,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소비)은 단지 연금소득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은퇴 전 소득은 은퇴 직전 3년 평균소득으로, 은퇴 후 소비는 은퇴시점의 연금총액을 은퇴기간동안의 확정연금으로 환산·배분한 금액으로 보고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우리나라 평균소득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은퇴기간을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소득대체율, 즉 실질소득대체율이 어느 수준인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셋째, 실질소득대체율은 구체적으로 노동패널상의 평균소득계층이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이후의 예상소득을 기초로 산출

하였으며, 통계청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해 산출된 임금상승률, 연금비교공시를 통한 투자수익률에 따라 가입기간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 및 연금 수급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연간 임금 총액의 8.33%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임금상승률 및 수익률 변수 감안)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근로기간(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 하기위해 가입기간을 30년, 35년, 4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기간은 평균기대여명을 고려하여 58세 이후 24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²¹⁾

2. 분석모형의 설정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 모형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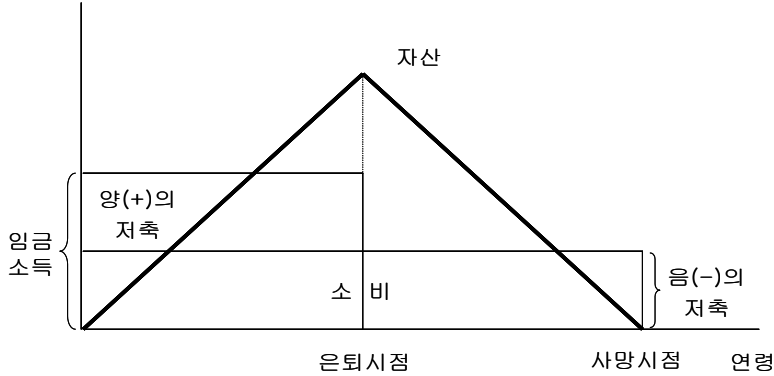
은퇴이후에도 적정 소비수준 유지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비함수의 모형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적정소득대체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가구소비에 대한 예측치와의 은퇴 이전의 소득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퇴 이후 가구소비 예측을 위한 가구소비함수 설정을 위해 평생소득가설을 기초로, t 시점의 가구 i 의 특성이 X_{it} 로 표현되는 가구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를 통해 가구소비를 가구소득 등 경제적 능력변수와 가구특성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21) 통계청(2008)에서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58세의 평균 기대여명은 24.6년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볼 경우 각각 21.8년과 26.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가구소비함수 모형은 허석균(2005)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고 있다.

<그림 V-1> 모딜리아니 피라미드 (평생소득가설)



일반적으로 가구특성변수는 내생적 외생적 변수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률적 또는 결정론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구특성변수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값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text{Max } E_t \left[\sum_{\tau=t}^T \beta^{\tau-t} u(C_{it}, X_{it}) \right]$$

$$A_{it+1} - D_{it+1} = (1 + R_{t+1})(A_{it+1} - D_{it+1} + Y_{it+1} - C_{it+1})$$

여기서, C_{it} :가구소비, X_{it} :가구특성, β :할인율

A_{it} :가구자산, D_{it} :가구부채, Y_{it} :가구소득, R_t :자산수익율

가구의 효용 극대화 문제화에서 이용된 기간별 효용함수인 $u(C_{it}, X_{it})$ 는 Attanasio and Bank(1998)이 제시하고 있는 CRRA(Constanct Relative Risk Aversion) 형태를 지니면서 C_{it} 와 X_{it} 의 분리가능성(separability)을 가정한 효용함수인 $[C_{it}^{1-\gamma}/(1-\gamma)]\exp(\xi'X_i)$ 이 적용이 되었으며, ξ 를 통해 가구원 수와 같은 규모변수들이 구성원의 효용에 미치는 규모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비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Value Function 으로 전환시켜 도출하였다.

$$V(A_{it} - D_{it} + Y_{it} - C_{it}) = \max u(C_{it}, X_{it}) + \beta E[V(A_{it+1} - D_{it+1} + Y_{it+1} - C_{it+1})]$$

H_{it} 를 인적자원의 가치, 즉 미래의 근로소득 흐름($Y_{ij}, j = t+1, t+2, \dots$)의 현재가치라 할 경우, 위의 Bellman Equation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소비는 완전자본시장의 가정에서 물적자산(physical asset)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합으로 표현되는 가구의 부(wealth)와 근로소득에 관한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C_{it} = \alpha(W_{it} + Y_{it}), \quad W_{it} = A_{it} - D_{it} + H_{it}$$

인적자본인 H_{it} 를 가구별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인 θ 와 백색잡음(white noise) ϵ_{it} 의 함수로 가정하여, H_{it} 를 $K \cdot \exp(\theta' X_{it} + \epsilon_{it})$ 로 표현하는 경우, 완전자본시장에서의 가구소비함수는 동원가능현금(cash-on-hand)과 인적자본과의 산술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C_{it} &= \alpha(A_{it} - D_{it} + H_{it} + Y_{it}) \\ &= 2\alpha \frac{(A_{it} - D_{it} + Y_{it} + K \cdot \exp[\theta' X_{it} + \epsilon_{it}])}{2} \end{aligned}$$

그러나 불완전 자본시장(imperfect market)의 경우 인적자본의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식의 산술평균을 다음과 같이 기하평균으로 전환하여 불완전 자본시장의 가구 소비함수로 설정하였다.

$$C_{it} = 2\alpha_0(A_{it} - D_{it} + Y_{it})^{\alpha_1} K^{1-\alpha_1} \exp[(\theta' X_{it} + \epsilon_{it})(1-\alpha_1)]$$

따라서 위의 최적함수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가구규모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log C_{it} = \log 2\alpha_0 + (1 - \alpha_1)\log K +$$

$$\alpha_1 \log(A_{it} - D_{it} + Y_{it}) + (1 - \alpha_1)\theta' X_{it} + (1 - \alpha_1)\epsilon_{it}$$

$$\log C_{it} = \log 2\alpha_0 + (1 - \alpha_1)\log K + \alpha_1 \log Y_{it} + (1 - \alpha_1)\theta' X_{it} + (1 - \alpha_1)\epsilon_{it}$$

첫 번째 식의 경우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이 되며, 두 번째 식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원 가능한 현금($A_{it} - D_{it} + Y_{it}$) 대신 소득을 고려한 소비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동태적 최적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의 변화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가 여러 시계열에 걸쳐 구성됨에 따라, 표본크기의 증가로 인해 자유도가 늘어나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패널자료에 포함된 횡단면 자료가 두 변수의 변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시계열자료에서 발생하기 쉬운 설명변수 간 공선성(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t} \quad ,$$

$$i = 1, 2, \dots, N, \quad t = 1, 2, \dots, T$$

여기에서, Y_{it} 는 t 시점에서 조사된 i 가구의 특성이며, X_{it} 는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이며, 총오차(u_{it})는 개별 가구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μ_{it})와 통상 에러(ϵ_{i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μ_{it} 는 개별 가구 및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개별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μ_{it} 를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mu_{it} = \mu_i$),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Y_{it} = \alpha + \beta' X_{it} + \mu_i + \epsilon_{it}$$

여기에서, 관측 불가능한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관측 효과(unobserved effect)를 나타내는 μ_i 에 대한 가정에 따라 모형의 성격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즉, 패널자료 분석 시 본 효과가 다른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비관측효과를 다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소비함수의 추정식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볼 것인가 확률효과 모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기술적 방법인 Hausman 검정결과에 기초하여 고정효과모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에 의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나. 실질 소득대체를 산출 모형

근로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을 통한 은퇴 이후 소득 대비 은퇴 이전의 평균 소득으로 정의되는 실질소득대체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시점의 우선 연금 자산규모가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기간 동안 연금수급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을 설정하여 은퇴시점의 연금 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TC_{i,k} = \sum_{t=s}^{e-1} r_c W_{i,t} \times \prod_{j=k}^t \frac{(1+w_j)}{(1+\gamma_j)}$$

여기서, $TC_{i,k}$: k 시점에서의 생애보험료, i : 가구, k : 기준시점,

s : 최초가입시점, e : 가입종료시점, r_c : 보험요율,

$W_{i,t}$: t 기의 연간임금소득, w : 임금상승률, γ : 할인율

위의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에서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연령, 가입기간, 은퇴기간(은퇴이후 사망시점까지의 기간),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세부가정이 요구되는데, 이들 각각

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 설정하였다.

1) 은퇴연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은퇴 연령이라 할 수 있는데, 고령화 패널조사(2006)에 의하면 평균 은퇴연령은 58.02세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문헌에서 은퇴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은 경제활동에 대한 설문자료 또는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55세, 60세, 65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구분 이외에도 권문일(1996)의 경우 “당신은 현재 은퇴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여부로 은퇴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정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에 따른 정의²⁴⁾, 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은퇴여부를 정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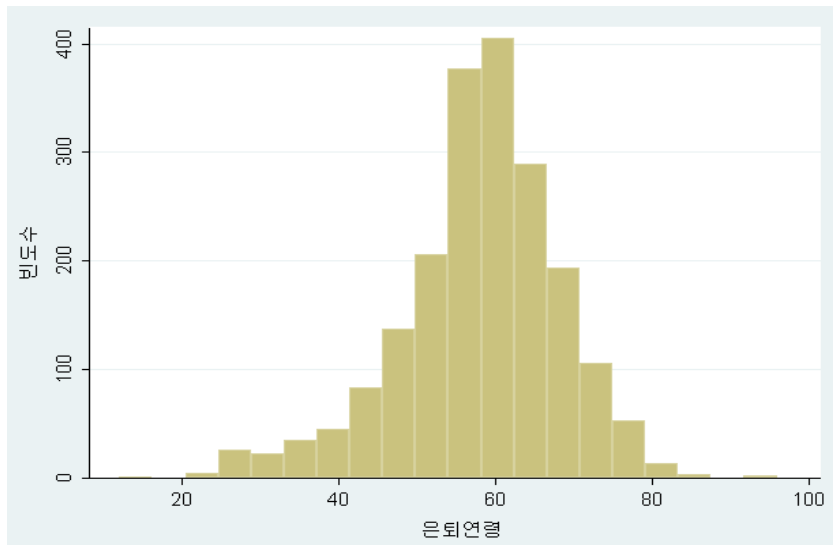
이에 반해 전병힐(2008)의 경우는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위험률을 정의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은퇴 연령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생존 분석을 이용한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방정식을 통해 평균은퇴연령 추정방식에 의한 평균 은퇴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²⁵⁾ 2007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61.9세, 여성의 경우 54.9세,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58.4세를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다.

23) 이는 노인복지법의 경우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수혜자격을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고령자를 55~64세로 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 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4) 노동시간에 따른 은퇴의 기준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arnes and Nestel(1974)의 경우 연간 1,000시간 미만을, Burtless and Moffitt(1984)의 경우 주당 30시간 미만을, Gustman and Steinmeir(2000)의 경우 주당 25시간 미만, 연간 1,200시간 미만은 은퇴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위험률을 계산한 후 노동인구로부터의 평균 이탈연령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V-2> 은퇴연령



<표 V-1> 은퇴 정의와 기준

분 류	정 의
연령	- 55세, 60세, 65세
노동시간	- 주당노동시간 25시간 미만, - 연간 노동시간 1,200시간 미만
임금수준	- 생애 최고급여의 60% 미만
주직장에서의 퇴사여부 가교직(bridge job) 고용여부	-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 4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 4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급여 수급	- 사회보험 수급자
은퇴여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 직접적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은퇴연령 추정식 이용	-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한 은퇴연령의 추정

주 : Gustman and Steinmeier(2000)의 경우 은퇴를 완전은퇴(Completely Retired), 부분은퇴(Partially Retired), 비은퇴(Not Retired)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본 표에서의 은퇴에 관한 정의는 부분은퇴와 완전은퇴를 포함한 정의임

자료 : Gustman and Steinmeier (2000), Retirement Outcomes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NBER Working Paper

한국노동패널의 경우도 4차년도(2001년)의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 및 6차년도(2003년)의 중·고령자 건강 및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에서는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있다.²⁶⁾ 그러나 그 이후 은퇴에 관한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이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6차년 이후 은퇴한 가구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은퇴개념 및 정의 등을 고려한 은퇴연령방정식을 이용하여 은퇴연령을 추정한 전병힐(2008)의 결과 및 고령화 패널조사(2006)에서 제시한 평균은퇴연령인 58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며, 은퇴연령방정식을 통해 은퇴연령을 추정한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는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6) 4차년도 부가조사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만 45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6차년도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만 50세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은퇴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다.

2) 은퇴기간

<표 V-2> 남자와 여자의 기대여명

(단위 : 년,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1997	2007	증감률	1997	2007	증감률	1997	2007	증감률
0세	74.4	79.6	6.9	70.6	76.1	7.9	78.1	82.7	5.9
10세	65.2	70.0	7.4	61.4	66.6	8.5	68.9	73.2	6.2
20세	55.5	60.2	8.5	51.7	56.8	9.8	59.1	63.3	7.0
25세	50.7	55.3	9.1	47.0	51.9	10.4	54.3	58.4	7.6
30세	46.0	50.5	9.9	42.3	47.1	11.3	49.4	53.5	8.3
35세	41.2	45.7	10.7	37.7	42.3	12.3	44.6	48.7	9.2
40세	36.6	40.9	11.7	33.2	37.6	13.3	39.8	43.9	10.2
45세	32.1	36.2	12.8	28.8	33.0	14.6	35.1	39.0	11.3
50세	27.7	31.6	14.1	24.6	28.6	15.9	30.4	34.3	12.8
55세	23.5	27.2	15.6	20.7	24.3	17.4	25.9	29.6	14.4
56세	22.7	26.3	15.9	19.9	23.5	17.7	25.0	28.7	14.8
57세	21.9	25.4	16.1	19.2	22.6	17.9	24.1	27.8	15.1
58세	21.1	24.6	16.4	18.5	21.8	18.1	23.2	26.8	15.5
59세	20.3	23.7	16.8	17.8	21.0	18.4	22.3	25.9	16.0
60세	19.5	22.9	17.2	17.0	20.2	18.7	21.5	25.0	16.4
61세	18.8	22.0	17.4	16.4	19.4	18.8	20.6	24.1	16.8
62세	18.0	21.2	17.8	15.7	18.6	19.0	19.8	23.2	17.3
63세	17.2	20.4	18.0	15.0	17.9	19.2	18.9	22.3	17.9
64세	16.5	19.5	18.4	14.3	17.1	19.4	18.1	21.4	18.4
65세	15.8	18.7	18.9	13.6	16.3	19.7	17.3	20.5	18.9
70세	12.3	14.9	21.1	10.6	12.8	20.5	13.4	16.3	21.5
75세	9.3	11.4	22.9	8.1	9.7	19.9	10.0	12.4	24.1
80세	6.7	8.4	25.4	6.0	7.1	19.6	7.1	9.0	27.6

자료 : 통계청, 2007년 생명표, 2008.12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금 추정을 위해서는 은퇴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며, 은퇴 기간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시점에

서의 기대여명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2008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생명표의 기대여명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은퇴연령을 58세로 보았으며, 이 경우 은퇴기간은 58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21.6년과 26.8년이며, 전체 평균 24.6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임금상승률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자산 산출을 위해 보험요율 및 연도별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적용시킬 임금 수준 및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다.

<표 V -3> 연도별 임금상승률

(단위: 천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Q
명목임금	1,426	1,543	1,667	1,752	1,947	2,127	2,254	2,404	2,541	2,683	2,778
실질임금	1,733	1,859	1,964	1,984	2,146	2,264	2,316	2,404	2,487	2,560	2,561
실질임금상승률	-9.31	7.31	5.64	0.98	8.16	5.51	2.32	3.77	3.44	2.94	0.03

자료 :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표 V-3>참조), 전년 대비 명목임금상승률 및 실질임금상승률이 각각 5.27%와 2.94%이며, 1998 ~ 2008년 2분기 사이의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이 2.80%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임금상승률은 2.80%로 가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4) 투자수익률

실질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생애 보험료 및 연간

수급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률은 은행연합회, 증권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비교 공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V-4>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운용 수익률

(단위: 억원, %)

	DB형		DC형		IRA형		전 체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2006	3,881	4.41	1,931	5.57	536	4.48	6,349	4.80
2007	18,253	4.96	7,036	7.05	2,241	6.93	27,529	5.66
2008. 6	26,476	4.44	11,105	1.70	2,860	1.02	40,441	3.44

자료 : 박진모(2008), 금융기관별 퇴직연금 운용방식 및 수익률 현황, 증권연구원

즉, 2006 ~ 2008년 6월 까지의 DC형 퇴직연금의 실질 운용수익률 평균값인 1.54%를 토대로 생애보험료 및 연간 연금수급액을 산출하였으며, 개인연금의 실질투자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2.10%로 적용하였다(<표 V-4>참조).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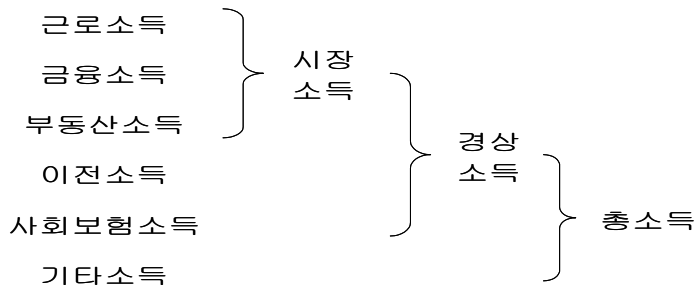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1~9차년도 자료²⁷⁾가 사용되었으며, 실질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데이터는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생명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공시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노동패널의 경우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²⁸⁾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은 시장소득으로, 시장

27)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비교를 통한 적정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차년도(1998년)에서 9차년도(2006)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득에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을 합한 것은 경상소득으로, 경상소득에 기타소득을 합한 것은 총소득으로 정의하여 분석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근로소득은 이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1~3차년도에의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4~9차년도의 경우 연간총소득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은 1차 년도에는 월평균으로 2~9차 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소득으로 조사가 되어,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조정한 분석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V-3> 소득의 구분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 소득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소비함수 추정모형에 따라 가구 소비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과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액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28) 노동패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임금,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시킴)
- ②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 (금융기관 이자소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수입, 주식의 매매차익 등)
- ③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 ④ 사회보험소득: 사회보험 수급액(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 ⑤ 이전소득: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에게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
- ⑥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당첨상금 등

<표 V -5> 소비함수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량

	평 균	표준편차	최 대	최 소
연령	50.0976	11.7980	21	87
성별	0.8866	0.3170	0	1
혼인유무	0.9699	0.1708	0	1
광역시도 거주여부	0.5310	0.4990	0	1
가구원수	3.5068	1.2671	1	10
교육수준	4.7418	1.4597	2	9
주택소유	0.6660	0.4716	0	1
소비	172.4967	110.8303	4.8	1811.6
임금소득	216.7709	185.7202	0	4110.1
총소득	346.0704	1338.007	0.2754	133388

이 경우 가구소비함수 추정 시 이용되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그 밖의 주요변수들의 주요 기초통계량은 <표 V-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4.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

가.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1) 가구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변수와 교육수준, 가구원수, 혼인상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성별 등 가구특성변수들로 표현된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은퇴이후의 가구소비 수준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소비함수와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함수로 구분하여 각각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log C_{it} = \alpha_0 + \alpha_1 \log Y_{it} + \alpha_2 X_{it} + \nu_i + \epsilon_{it}$$

$$\log(C_{it}/n_{it}) = \beta_0 + \beta_1 \log(Y_{it}/n_{it}) + \beta_2 X_{it} + \tau_i + v_{it}$$

이 경우 첫 번째 식은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 소비함수식이며, 두 번째 식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구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가구 특성벡터를 나타내는 X_{it} 에는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유무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은 인적자본 축적량(human capital accumulation)에 대해 이차곡선(quadratic)의 형태를 띠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가구특성변수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연령의 제곱항도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V-6>과 같다.³⁰⁾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하게 영향을

29) Mincer(1958)는 교육연수, 근무연수, 건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타요소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인적자본을 반영한 특정 근로자 계층의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연령에 따른 소득분포(age-earning profile)를 나타낸 인적자본 소득함수(human capital earnings function)를 $\log w = as + bt - ct^2 + \epsilon$ 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s 는 교육수준을, t 는 근무기간을 나타내며, t^2 는 연령에 따른 소득의 볼록성(concavity)을 파악하기 위해 근무년수의 이차함수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30) 여기에서는 설정된 패널모형의 추정식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볼 것인가 확률효과모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선택은 Hausman Test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방식에 의해 얻어진 각각의 추정치 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해당 가설에 대한 χ^2 검정을 수행한 후,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고, 기각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한다. Hausman 검증 결과를 보게 되면, 귀무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소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소득,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구주 성별 및 광역도시 거주여부 등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이미 가구주 성별 변수가 설명하는 바를 설명하였거나, 선택편의에 의해 자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구주의 성별 변수에 대한 부호 및 유의성이 모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더미변수로 사용된 은퇴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 보다 더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 -6>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I)

log(소비)	모형 1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3821 *** (0.0044)	0.1148 *** (0.0045)
가구주 연령	0.0675 *** (0.0023)	0.0356 *** (0.0014)
(가구주 연령) ²	-0.0005 *** (0.0000)	-0.0003 *** (0.0000)
성별 (남성=1)	0.0157 (0.0133)	0.0778 *** (0.0074)
교육수준	0.0673 *** (0.0056)	0.6815 *** (0.0019)
광역시도 거주여부 (거주=1)	0.0010 (0.0119)	0.0309 *** (0.0046)
결혼유무 (결혼=1)	-0.0513 ** (0.0200)	0.0452 *** (0.1330)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151 *** (0.0050)	0.0278 *** (0.0043)
가구 구성원수	0.0079 *** (0.0021)	0.3920 *** (0.0018)
은퇴여부 (은퇴=1)	-0.0282 *** (0.0079)	-0.0716 *** (0.0073)
상수항	-0.2941 (0.0675)	0.3957 (0.0381)
R-squared	0.0327	0.5448
Hausman Test	$\chi^2 = 1849.25$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한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 요소는 가구의 규모효과이다. 즉, 가구원수가 작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와 비교할 경우 1인당 소득 및 소비가 높지만 가구의 총소득 및 소비규모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상이한 가구규모 사이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게 되는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이다. 예를 들어 가구 i 의 총소득과 가구 구성원수를 각각 Y_i 와 S_i 로 나타낼 경우, 가구 i 의

각 구성원 j 에 대해서 조정된 소득(W_{ij})은 Y_i/S_i^ϵ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ϵ 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규모의효과(economies of scale)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elasticity)을 의미한다. ϵ 이 0인 경우 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한 가구 내 추가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정하여 가구규모 조정 후의 소득이 조정 이전의 가구소득과 동일함을 나타내며,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규모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가구 규모를 반영한 소득은 1인당 소득과 동일함을 나타낸다. 즉, ϵ 값이 작을수록 소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짐을 나타낸다.

McClements(1977)의 경우 어른과 아이별로, 그리고 자녀의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값을 할당하여 동등화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경우 0.61을, 배우자의 경우 0.39의 값을, 가구 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인의 경우 0.46과 0.42의 값을 0~1세, 2~4세, 5~7세, 8~10세, 11~12세, 13~15세, 16~18세의 자녀에게는 각각 0.09, 0.18, 0.21, 0.23, 0.25, 0.27, 0.36의 값을 부여하여 가구구성원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Citro and Michael(1995)의 경우는 가구 내 어른의 수(A_j)와 아이의 수(K_j)를 고려하여, 위에서 정의된 균등화 지수인 S_i^ϵ 에 해당하는 n_j 를 $n_j = g(A_j + K_j) = (A_j + 0.7K_j)^{0.7}$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OECD 균등화 지수를 살펴보면, 1982년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수(Oxford Scale)의 경우 가구주, 추가적인 성인, 자녀마다 각각 0.7, 0.5, 0.3의 값을 부여하고 있으며, 1994년 Haagenars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 이용되고 있는 OECD 수정지수(modified scale)의 경우는 가구주, 추가 성인 구성원, 자녀에게 각각 1, 0.5, 0.3의 값을 부여하여 산출하고 있다. 국가 간 소득 불평등도 및 빈곤에 관한 비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근 OECD 연구들에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서 사용하게 된다(<표 V-7>참조).

<표 V-7> 주요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Mc Clements	Citro and Michael	Oxford	OECD 수정 지수	제공근지수
성인 1명	0.61	0.62	0.59	0.67	0.71
성인 2명	1.00	1.00	1.00	1.00	1.00
성인 2명, 자녀 1명	1.23	1.23	1.29	1.20	1.22
성인 2명, 자녀 2명	1.46	1.45	1.59	1.40	1.40
성인 2명, 자녀 3명	1.69	1.65	1.88	1.60	1.56
성인 1명, 자녀 1명	0.84	0.89	0.88	0.87	1.00
성인 1명, 자녀 2명	1.07	1.14	1.18	1.07	1.22
성인 1명, 자녀 3명	1.30	1.36	1.47	1.27	1.41

주 : 1) McClements 지수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별, 주거비용 전·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나, 본 표에서는 주거비용전 그리고 평균자녀연령대(8~10세)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임

2) 가구원수에 따른 지수 간 상대적 비교를 위해, 성인 2명(부부)을 기준으로 각 지수의 값을 조정함

자료 : Jonathan Bradshaw, A New Equivalence Scale, Minimum Income Standards Working Paper를 수정 보완함

이에 여기에서는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OECD 수정 지수(n_{it})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구 내 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log(C_{it}/n_{it}) = \beta_0 + \beta_1 \log(Y_{it}/n_{it}) + \beta_2 X_{it} + \tau_i + v_{it}$$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Hausman 검증 결과를 보게 되면, 귀무가설 $H_0: Cov(X_{it}, v_i) = 0$ 이 기각됨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추정결과(<표 V-8>참조),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식과 동일하게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 -8>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II)

log(소비)	모형 2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0327*** (0.0045)	0.1142*** (0.0045)
가구주 연령	0.0607*** (0.0023)	0.0328*** (0.0014)
(가구주 연령) ²	-0.0004*** (0.0000)	-0.0003*** (0.0000)
성별 (남성=1)	-0.0689*** (0.0013)	0.4012*** (0.0071)
교육수준	0.0665*** (0.0058)	0.0665*** (0.0018)
광역시도 거주여부 (거주=1)	0.0038 (0.0123)	0.0287*** (0.0045)
결혼유무 (결혼=1)	-0.1902*** (0.0204)	-0.0484*** (0.0127)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071 (0.0052)	0.0240*** (0.0042)
은퇴여부 (은퇴=1)	-0.0124 (0.0081)	-0.0611*** (0.0073)
상수항	-0.1182 (0.6968)	0.5006 (0.0375)
R-squared	0.0064	0.4042
Hausman Test	$\chi^2 = 17466.73$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이는 첫째,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소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광역도시 거주여부, 주택소유, 은퇴여부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셋째,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에서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가구주 성별 변수의 경우,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은퇴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은퇴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앞서 도출된 은퇴자 비은퇴자를 모두 포함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비 비율을 통해 적정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표 V-9>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모형1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1.0428	0.3918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495	0.3624
모형2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0.9813	0.4024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147	0.4178

가계 소비함수의 회귀선 상의 값으로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가 파악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은퇴 전 소비대비 은퇴 이후 소비비중 및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이후 소비 비중을 통해 <표 V-9>와 같은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 은퇴 이후의 가구소비 추정치를 통해 산출된 적정 소득대체율은 61.47%~64.95%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모형 상의 생애보험료 산출식과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생애연금자산을 산출한 결과는 <표 V-10>와 같다.

<표 V-10>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자산 산출결과

(단위: 천원)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78,803	125,593	100,153	168,062	123,862	218,715

<표 V-10>에서 보면 개인연금에 매월 20만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직전 개인연금 자산은 가입기간에 따라 7,880 ~ 12,38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12,559 ~ 21,871만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11>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월수금액 산출결과

(단위: 천원)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51	525	446	702	552	914

주 : 가입기간 만료 후 연금자산총액을 은퇴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연금으로 환산한 공식은 연금자산총액 / $[\{1 - (1-r)^{-n}\} / r]$ 이 적용됨. 여기서 r은 이자율, n은 기대여명임.

이제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기 위해 <표 V-10>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은퇴기간(은퇴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수급하게 되는 연금액과 은퇴 이전의 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하는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을 가정하는 경우 생애연금자산과 동일한 현재가치를 가지는 연간 연금액은 <표 V-11>와 같이 산출된다.

<표 V-11>에서 보면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간 수금액이 35~5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으로 은퇴기간 동안 매년 수급하게 되는 금액은 52~9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산출된 연간 수금액을 은퇴 이전의 급여수준(은퇴직전 3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V-12>과 같다.

<표 V -12>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단위 : %)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6.3	9.4	7.0	11.0	7.5	12.5
15.8		18.0		20.0	

산출결과,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6.3 ~ 7.5%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의 경우는 9.4 ~ 1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현실적으로 시현할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15.8 ~ 20.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분석상의 시사점

지금까지 적정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 의한 적정 소득대체율은 64.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기간(연금가입기간)을 35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47.5%(개인연금 포함시 총 실질소득대체율은 5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데이터상의 표준근로소득자가 퇴직 후 평균기대여명 동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해 시현할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연금가입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18%, 근로기간(연금가입기간) 35년 가정시에는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적정소득대체율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차이인 45%는 공적연금에서 보전하여야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30%에 훨씬 못 미치는 12.5%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제외하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5%(35년 기준)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5%를 합하더라도 겨우 47.5% 수준이어서 국제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사연금 실질소득대체율(60~70%)에 비해 약 12.5~22.5%이 미달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에 의한 노후소득보장효과는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가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체계에 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V-4>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표준근로자 기준)

3층 개인연금	10 ~ 20%		개인연금	7.5%
2층 퇴직연금	30%		퇴직연금	12.5%
1층 공적연금	30%		국민연금	35%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70 ~ 80%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
55%

VI.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전과 기대수명의 증대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대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60%이상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의존하여 노후소득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제고 필요성은 그 만큼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이 약 65%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공사연금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적절히 운용하느냐 하는 여부 등이 구조적(시스템적) 또는 부분적(파라메타적) 연금제도 개선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① 세계에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은퇴기간이 긴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어 연금제도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③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및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 및 기업, 개인의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대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선, 공적연금의 이원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구조적 연금제도 개선과 더불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적 연금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전체의 틀을 제시하는 구조적 연금 개선을 통해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자체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적 연금개선을 통해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제고시키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³¹⁾

가.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급부체계의 개선

우리나라 퇴직급부체계는 <표 VI-1>과 같이 법정퇴직금제, 중간정산제, 퇴직연금가입 강제성, 중도인출제 등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퇴직급부형태를 띠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장점(연공서열식 퇴직금 산정과 임금상승률에 따른 퇴직누진제 성격, 과도한 법정퇴직금세제혜택 등)를 완화하여 가되, 장기적으로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1) 여기에서 부분적(파라미터적)개선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의미하는 보험요율 및 연금급부 등의 모수적 변화를 통해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아닌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 자체의 제도적 개선을 부분적(파라미터적)개선으로 가정하였다.

<표 VI-1> 퇴직금부체계의 개선

	현 황	개 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법정퇴직금제	퇴직급여제도로 존속	법정퇴직금제 이점 완화	점진적 폐지
중간 정산제	제한적 허용 (근퇴법개정안)	제한적 허용 (한시적)	허용금지(원칙) (패널티부여)
퇴직연금가입	신설사업장가입 의무화 부분인정 (근퇴법개정안)	신설사업장가입 의무화(세제지원병행) 일시금수령 엄격제한	가입의무화
중도인출제	임의적 허용 (주택구입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 (사망 및 질병시)	인출시 패널티세 부여

주 : 단기 및 장기의 구분은 퇴직보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정퇴직금제도의 이점 감소 및 폐지는 <표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증대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의무화를 단기적으로 세제지원과 연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예외규정 없이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종전과 달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선진국³²⁾처럼 상해 및 질병 등으로 한정하고, 상해 및 질병이외의 인출시는 패널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³⁾

32) 미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망, 상해퇴직, 퇴직연도의 연령도달, 전직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특전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패널티(10%)로서 범칙금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중도인출과 대출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불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납부주체가 개인인데 반하여 일본은 납부주체가 기업이므로 수급권을 기업에서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33)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도인출의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패

2) 연금세제 체계의 개선

퇴직연금 관련 세제내용은 <표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혜택의 미흡, 퇴직급여 총당금 손비한도의 과도한 인정 등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작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I-2> 연금세제 체계의 개선

	현 황	개 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
퇴직급여불입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개인연금합산)	개인연금소득공제와 구분, 별도300만원설정	미국수준으로 상향 (단 한도설정)
퇴직급여총당 금 손비한도	30% (기간과 무관)	단계적 축소 (기간과 연계)	완전폐지
퇴직연금수령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단계적 공제한도 인상	
기존퇴직금 소득공제한도	45%	단계적 공제한도 인하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차원에서 기업의 퇴직급여총당금을 손비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사외적립수준을 제고함과 더불어 실질적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급여불입액 중 소득공제 한도를 미국³⁴⁾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였던 240만원에 퇴직연금 가입분 까지 합쳐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퇴직연금전환의 유인효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소득공제와 구분하여 별도로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환차원에서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점진

널티 등과 같은 범칙금 부과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구입시,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에도 개별적립금의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미국은 1,55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적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립금 운용규제체계의 개선

우리나라 적립금 운용규제체계는 <표VI-3>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입각한 질적규제보다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규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운용폭을 제한하여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자칫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8년 2월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DB형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를 완화하였으나 DC형의 경우 개인 근로자의 투자지식 등을 고려하여 주식, 부동산, 주식형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엄격히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VI-3>참조)

<표 VI-3> 적립금 운용규제체계의 개선

	현 황	개 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DB형	양적규제방식 (위험자산: 일부허용)	- 현행체계 유지 · 계약형 지배구조, 수급권보호, 수탁자 책임장치 한계,	최소한도의 양적규제 건지 (수급권보호전제)
DC형	양적규제방식 (위험자산: 금지)	근로자 안전성 선호, 금융시장 불안전성, 투자교육미비 등 - 규제완화의 보완조치 미비 개선	질적규제로 전환 (수탁자책임전제)

이러한 위험자산의 투자제한 등은 퇴직연금자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업 및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주요국처럼 자율규제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로

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표VI-3>참조).

다만 이 경우 퇴직연금 규제완화의 보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즉 퇴직연금 규제완화는 수탁자책임과 수급권보호 장치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같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수탁자책임 위반시의 제재조치 마련,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기준의 강화, 보험계리사에 의한 연금지급 검증 및 확인,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등 제반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이 규제완화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요구된다. 즉, 수탁자책임 및 수급권보호장치 등과 같은 규제완화의 보완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채, 퇴직연금 규제완화가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전면 전환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에 따른 투자손실과 소송리스크 증대 등으로 이어져 근로자 수급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는 규제완화의 보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연금지급 보장체계의 개선

2008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래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150%초과 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기존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보다 법적·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적

립과부족시 연금재정 검증절차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의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및 비계속기준시의 연금재정 검증절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진국처럼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 시 연금재정 시 계리사의 검증을 반영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고, 연금수리 개념에 입각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불이행시의 제재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 및 비계속기준시의 연금재정 검증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수리 개념에 입각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책임준비금 검증 및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표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도입)³⁵⁾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장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협의의 수급권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근로자에게 완전한 수급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³⁶⁾ 등에 의한 수급권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35) 퇴직금제도의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다소 높이기 위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근로자 측의 요구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등의 도입을 수용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원식(2005) 참조.

36) 기업이 임금총액의 0.2%(2005년도 0.04%)안에서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되었지만 체불임금도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기업의 기여금수준이 단지 임금총액의 0.2%에 지나지 않다는 점 등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VI-4>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현 황	개 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책임준비금 검증 및 확인	검증근거신설 (근퇴법 개정안)	신설조항 보완 - 검증주체책임 명확	근퇴법규정 전면개정 · 미일의 관련법준용 (제3자적 감시자역할 등)
수급권보호 장치(DB)	협회의 보호장치만 존재	퇴직금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 보완	지급보증제도 도입 · 정부 지원 병행

따라서 <표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우선 변제제도에 적용되는 퇴직금을 현행 “3년 퇴직금”에서 최소한 “5년 이상 퇴직금”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대폭 증대하는 문제 등을 연금지급보장체계 마련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보장 공사(PBGC) 등과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제도를 도입·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에 의한 수급권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기업도산 시 연금수급자에게 대한 급부 필요액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급보장제도는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급보장제도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대체로 임의가입방식의 국가들은 정부에서 인수(take-over)방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들은 민간 기구에서 판매(buy-out)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³⁷⁾

37) 안정성측면에서는 지급보증기구가 계약이전부터 계약이행(연금지급)까지 자체 운영하는 인수(take-over)방식이 근로자입장에서 안정감이 존재하며, 비용측면에서는 판매(buy-out)방식이 부실 연기금을 정상화시킨 후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이며 보증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5) 연금운용 형태의 개선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발전되고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자 니드에 부합한 여러가지 특성을 지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운용형태는 <표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이들 퇴직연금의 형태를 조합한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을 보다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급부를 고려한 연금비용을 연금수리적 개념에 의해 산정(재정방식 적용)하는 형태인 전형적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이익분배형(profit-sharing), 주식상여형(stock bonus plan), ESOP, Money Purchase Pension Plan, SIMPLE, SEP, Section 401(k) Plan, Keogh Plan 등과 같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표 VI-5> 연금운용형태의 개선

	현 황	개 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DB형	- 비전형적 연금운용 - 상품운용 다양성 결여 (근로자 선택폭 제약)	CB형 퇴직연금상품 도입·운용	전형적 DB형 운영체제로의 전환 (연금수리개념 적용)
DC형 (IRA포함)			DC형 퇴직연금상품 다양성 확보

실제 미국처럼 기업의 영업이익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해 주는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주주제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경우 사용자인 기업 측에서는 기업의 특성 및 환경에 맞게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퇴직연금 상품 선택폭의 증대로 이어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 개인연금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중요시 되므로 보다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연금제도에 의해 소득대체율을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수준(20%~30%)으로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방식의 개선,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소득공제대상의 확대, 계약이전제도의 보완, 해지시 불이익해소방안의 모색 등이 요구된다.

먼저 소득공제방식의 개선측면에 볼 때, 개인연금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계층보다 낮은 소득계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방식 검토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제적격이든 세제 비적격이든 개인연금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저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인연금가입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소득별 소득공제 차별화 등)이 있다.

둘째,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개인연금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개인이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금자산의 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자산운용방법을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의 연금가입자, 즉 일정소득계층이하 사람들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요구하는 기간 충족시, 개인의 납부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차원의 보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빈층은 정부차원의 보조로 개인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한다고 하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장선상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가계로 한정하여, 전업주부의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개인연금제도의 가입율을 제고하는 방향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Spousal IRAs(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제도가 있어서 2006년 현재 일하지 않는 배우자도 각각 연간 4,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부부간 여성의 연령이 대체로 낮고 기대수명은 더 긴 것을 감안하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계약이전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개인연금계약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게 계약이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약이전을 거부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등은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의 통합, 1개의 계약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해지시 불이익 해소방안의 모색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구개인연금보다 매우 크다. 즉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율 10%의 두 배인 기타 소득세율 20%가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되며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에 추가하여 5%의 해지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개인연금가입의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입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³⁸⁾

가. 역할분담모형 설정의 제가정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에 의해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소득대체율)가 실현되어야 하는 지를 사전에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여,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시안적인 측면에서 실제 추정하였다.

① CY 2000~2007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평균 증가율 3.81%)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은퇴이후 최저생계비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구성항목, 즉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최저 소득대체율(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은퇴전 소득을 은퇴직전 근로소득(A),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B)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표준가구의 은퇴 전 근로소득 대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의 비율 (=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의 은퇴전 근로소득)에 의해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④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절차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며 연금가입은 30년, 35년, 40년 간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금가입 기간을 30년, 35년, 40년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것은 실제소득대체율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정함에 따라 실현

38) 여기에서는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모형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①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역산하여 실제추정하고, ②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역할분담모형을 설정한 후(설정근거) ③ 실질소득대체율과 적정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역할분담모형을 시안적으로 설계(소득대체율 배분)하였으며 ④ 이 역할분담모형이 작동하기 위한 운용체계를 매크로적으로나마 제시(역할분담모형의 운용체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사연금 역할분담모형을 기초로 연금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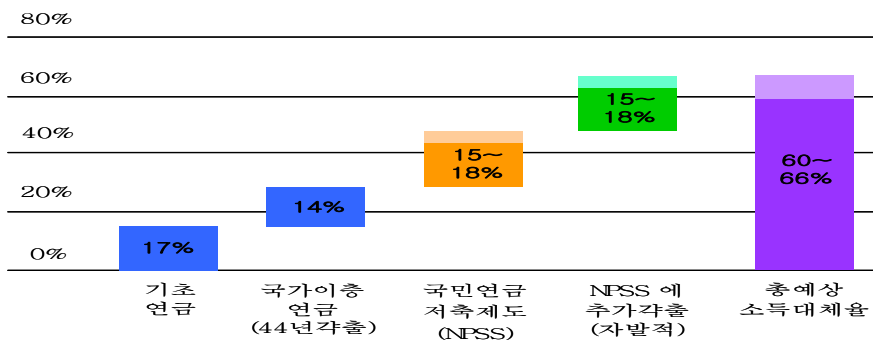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제가정에 의해 연금가입 기간이 30년, 35년, 40년인 경우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VI-6>과 같다. 즉, <표V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가입 기간 3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은퇴직전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19.0%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21.0%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그림 VI-1>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국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17%를 다소 상회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I-6>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표준가구기준)

구 분	30년	35년	40년
은퇴직전 근로소득기준(A)	18.4%	19.0%	19.7%
은퇴직전 3년평균 근로소득기준 (B)	20.0%	21.0%	22.0%
평균 소득대체율	19.2%	20.0%	20.9%

<그림 VI-1> 영국 중위소득자의 예상 소득대체율



주 : 은퇴시점을 2053년으로 가정하고 산출된 수치임.

자료 : Pensions Commission, A New Pension Settle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005

나. 역할분담 모형의 기준 설정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①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체계(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보완기능 역할)를 지향할 것이냐, ②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체계(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기능)를 지향할 것이냐, ③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혼합형 공사연금 역할 분담체계를 지향할 것이냐(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보완기능 이외에 대체기능 일부인정) 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연금제도의 로드맵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상과 같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모형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여 어떠한 분담모형이 우수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특성 및 사회보장구조의 특성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과 트렌드를 볼 때,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 등으로 보완형에서 대체형으로의 전환가속화, 보완형 자체 속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가 재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처럼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가속화 할 것이 예상됨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의 역할을 공적연금의 보완기능에서 점진적으로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보완기능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전환하는 공적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원활하게 정착하여 간다는 대전제 하에서, 보완형 자체 속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연금 역할분담체계 방안이 병행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역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금의 역할이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되, 궁극적으로

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역할분담체제로 적극 전환하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역할 분담 모형의 설계 및 특징

우리나라에 고려될 수 있는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체계는 궁극적으로 공적연금 우위형,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조화형 보다는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형(소득비례부분의 법정 완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법정 부분 대체형, 단체협약에 따른 공적연금 부분 대체형 및 적용제외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소득비례부분의 법정 완전대체형 등과 같은 공적연금의 민영화 방안³⁹⁾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연금가입자의 불확실성 및 위험도 가중 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제외형⁴⁰⁾ 또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하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적용제외방안과 민영화방안을 절충한 역할분담 모형이다. 즉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저소득계층의 사각지대 문제와 완전 소득비례 연금제도

39) 공사연금제도의 연계모형 중 칠레모형인 공적연금 민영화모형은 민간부문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제도를 통해 공적연금을 완전 민영화하는 모형이다. 이모형에서 정부는 법적 강제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리·징수·급여업무 및 기금운영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민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구좌(PSA)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나 임의가입이 아닌 법 규정에 따른 강제저축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1981년 칠레의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페루(1993), 콜롬비아(1994), 아르헨티나(1994), 우루과이(1996), 멕시코(1997), 볼리비아(1997) 등 대부분 남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40)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경우 적용제외에 의한 공사연금 역할분담체제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환하는 것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적용제외에 의한 공사연금 역할분담체계는 바람직한 공사연금 연계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가는 상황에서는, 즉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요소의 결여를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대안모형은 국민연금의 부분적 민영화 모형으로 공적연금에 기초한 기초소득보장과 사적연금방식으로 소득비례부분을 운용하는 모형이다. 즉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는 공적연금제도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국민연금의 적용제외부분을 퇴직연금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VI-2>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 설계(안)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개인연금	7.5%	개인연금 (7.5%+α)	α % 7.5%
퇴직연금	12.5%	퇴직 + 소득 (37.5%)	22.5% (퇴직연금) 15%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
국민연금	35%	기초연금 (20%)	20% (기초연금)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 55%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 65%

- 주 : 1) 역할분담 전 소득대체율 55%는 제V장에서 추정한 실질소득대체율을 의미함 (연금가입 35년기준)
- 2) 역할분담 후 소득대체율 65%는 제V장에서 추정한 적정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적정소득대체율 65%를 시험하기 위해 연금제도형별로 소득대체율을 재분배한 것임.
-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5.0%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설정한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설정(적전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대체율 산정시 소득대체율 수준 다소 하회)

이제 제시된 역할분담모형을 제V장의 분석결과 및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등을 토대로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보면 <그림 VI-2>과 같다. <그림 VI-2>는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20.0%,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15.0%, 퇴직연금 부분의 소득대

체율 22.5%, 개인연금 부분의 소득대체율 7.5%+a 등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금가입 기간 35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소득대체율 65.0%와 연금제도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실질소득대체율 55.0%의 차이(Gap)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을 시안적으로 제시하여 보면 <그림 VI-2>와 같다.

결국 <그림 VI-2>에서 보는 것처럼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사연금 역할분담 모형 설계에 의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강화, 그리고 적정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 대체율 간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라. 역할 분담 모형의 운용체계

1)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운용체계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 부분은 공적연금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되, 소득비례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 부분은 소득대체율 20% 수준의 확정급여형 기초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20%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초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계속 운용하되, 소득대체율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소득비례부분 15%는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완전 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fully-funded DC) 또는 명목확정기여(NDC: Nominal Defined Contribution)⁴¹⁾ 형태로 운영하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산

41) NDC제도는 근로기간동안 근로자개인의 공적연금에의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과 과도한 세대간 불균형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급여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기여와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한 제도이다. 통상 NDC에서는 근로기간동안 적립된 기금에 가산된 이자율로 정의되는 적립액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법은 개인별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 NDC방식으로 적정이율을 부리한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택한 구좌를 이체하여 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표 VI-7>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운용체계

	역 할 분 담	
	연금형태	적용방식
소득비례부분	소득비례연금 (적용제외)	DC형 방식 (완전적립식 DC형, 또는 NDC)
소득재분배부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0%수준 적용)	DB형 방식

주 : 본 연구의 소득재분배(기초연금)부분 소득대체율 20.0%는 기초생계비 및 고령수자 등을 고려하여 추계

35년을 가입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35.0%를 기초연금부분의 소득대체율 20.0%와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15.0%로 구분하여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15.0%는 적용 제외하는 것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완화차원에서 바람직하다.⁴²⁾ 다만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운용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형태로 운용하고, 보험료 방식보다는 정부의 일반계정에 의해 조세방식⁴³⁾ 또는 부과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⁴⁾

42)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은 현 공적연금제도의 체계(35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5%)를 가정으로 시안적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분리하고 기초연금의 재원조달은 현행 보험요율 9%중 5.1%($=9\% \times \frac{20}{35}$)로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각지대, 조세방식, 기초노령 연금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43) 참고로 조세방식에 의해 재원부담액을 단순 추정하는 경우 60세 이상 인구 기준 시 2조 7,262억원(월 기준), 65세이상 인구기준시 1조 9,029억원(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44) 이 경우 구체적인 보험요율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재정추계와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과 운용체계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그림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대체율을 연금가입 35년 12.5%수준에서 최소한 22.5%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금가입 35년 12.5%수준은 중간정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다는 전제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여건이 근무기간 35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설정되었다. 따라서 <그림 VI-2>에서 제시된 소득대체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시키는 제반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사전에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고용시장의 안정화 및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12.5%수준의 소득대체율 자체도 사실상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전제하에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공사연금 역할분담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22.5%수준으로 설정하고 10.0%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보험료기여율 이외에 노후대비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어떻게 퇴직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역할분담 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상으로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역할분담 전 보험료 기여율 8.3%이외에 노후대비를 위해 얼마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표 VI-8>참조).

<표 V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역할분담 전 가정한 운용수익률 4.77%에서 6.85%로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거나 역할분담 전에 비해 근로자가 보험료 기여율 6.71% 만큼 추가 납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제도는 역할분담 전 가정한 운용수익률 5.33%에서 $5.33\% + \alpha$ 로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거나 근로자가 20만원 이상 즉, 20만원 $+\alpha$ 로 가입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7.5% $+\alpha$ 이상의 소득대체율이 실현될 것으

로 보인다.

<표 VI-8> 역할분담 전후의 운용수익률 및 연금가입액 추정

	운용수익률 부분		연금가입액 부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퇴직연금	4.77%	6.85%	보험료 기여율 8.33% (임금의 1/12)	보험료 기여율 8.33% + 6.71% (근로자추가납)
개인연금	5.33%	5.33% + α	20만원	20만원+ α

주 : 운용수익률은 명목투자수익률 기준임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인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⁴⁵⁾

4.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는 고령사회의 도래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차원에서도 고령화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모색하고, 기업은 고용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45)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된다는 가정(35년 연금가입전 제 등)하에 역할분담 전후의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실질소득대체율 제고)차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방안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즉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부문이 본 연구의 핵심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절(전술)을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은퇴이후의 노후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며, 개인은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을 고려한 사전적 노후소득대비가 이루어지는 자세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후소득대책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이 고령화리스크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문화적 특성 차이 여하에 따라 동일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틀 하에서도 운용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고용구조의 취약성, 사적연금의 보완 또는 대체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개별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개선 로드맵이 사전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기초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구조적 개선의 범위와 방향 등이 사전에 설정되고 이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개선 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⁴⁶⁾ 향후 정부와 기업의 고용정책 방향성과 연계하여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더불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6) 선진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감소차원에서 최근 정년을 과감히 폐지하거나(예: 미국),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독일: 65세에서 67세로 연장)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4층 노후소득대책으로의 전환 차원에서 은퇴자의 재고용 및 취업지원 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VII. 결 론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적연금중심으로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변화는 사적연금기능이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전환되고 사적연금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향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은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차원에서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금소득(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55% 수준으로 근로자의 적정소득대체율(61~65%)에 못 미치고 있어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가입기간 3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금의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12.5%,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7.5%인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OECD 및 ILO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해 30%대의 소

득대체율을 실현하는 데에는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적 개선과 더불어 공사 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와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적 개선차원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는 ① 퇴직 급부체계의 개선 ② 연금세제체계의 개선 ③ 적립금 운용체계의 개선 ④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⑤ 적립금 운용형태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과 저소득계층 연금가입에 대해 실질 수익률이 향상되도록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적정 및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 등에 기초한 역할분담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적용제외를 통한 공사연금 연계방안보다는 이들 모형을 절충한 통합모형의 설계 및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적·부분적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정년조정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토록 하고 은퇴자의 재고용 등이 은퇴이후의 노후소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한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원섭 · 김수환 · 주은서 · 최영준, 주요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 · 사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과제, KDI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 _____, 고령화 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 보험연구원 & 하나 HSBC 생명보험, 국제세미나, 2008.6.
- ____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2008년 2차 금융산업발전협의회 발표자료 2008.6.
- 류건식 · 김동겸, 퇴직연금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 IBR, 2008.2.
- 류건식 · 정석영,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 (통권67호), 대한경영학회, 2008.4.
- 문형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 문형표 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방하남 · 문형표 · 신기철 · 원종욱,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석재은, 노인소득원 구성과 공 · 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2000
- _____,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2003
- 안종범 · 전승훈,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2005
- 엄동욱 · 이은미,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여윤경,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3호, 2002

- 오영수 · 류건식 · 임병인 · 김재현,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구, 제19집, 한국금융연구원, 2005.8
- 원종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윤석명,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_____,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8
- 윤석명 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이봉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분석 및 대응과제,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제77집, 2007.8.
- 이봉주의 2, 韓國型 退職年金制における 受給權保護と 向後の課題, 保險學雜誌 第593号, 日本保險學會, 平成 18年6月, 2006.6.
- 전병힐, 평균은퇴연령에 대하여,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8.8
- 허석균,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 山田正次(1996), 『變革期の企業年金戰略』, 日本經濟新聞社.
- Ando, A. and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1963
- Andre Laboul,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 1998
- Axel H. Borsch-Supan and Meinhard Miegel, "Pension Reform in Six Countries: What Can We Learn From Each Other?", Springer, 2001

- Birgit Mattil, Pension Systems, Physica-Verlag, 2006
- Bradshaw Jonathan, "A New Equivalence Scale", *Working Paper*, 2008
- Ellen M. Immergut, Karen M. Anderson, and Isabelle Schulz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Friedman, M.,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Hall, R.,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 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8
- Independent Evaluation Group-World Bank, "Pension Reform and the Development of Pension Systems", *World Bank*, 2006.
- James C. Capretta, "Global Ag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System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
- Martin Rein and John Turner, "Public-Private Interactions: Mandatory Pensions in Australia,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2001
- Michiel Van der Auwera, "Pension Reform and ADB Interventions", Asian Development Bank, 2006
- Mincer Jacob,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8
-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 Orazio P. Attanasio and James Banks, "Trends in household saving: a tale of two countries", *IFS Working Papers*, 1998
- Pension Commission, "A New Pension Settle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econd Report of Pensions Commission", London

Stationary Office, 2005

Queisser, M. and E.R. Whitehouse,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2006

Robert Holzmann and Richard Hinz,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2005

William G. GALE, "Public Policies and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994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검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연구논문집

-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1호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2호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3호
-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4호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2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3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4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5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6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7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8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9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0호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4415 팩스 : (02)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이 창 우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 cleee@kiri.or.kr)

김 동 겹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dg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발 행 일 2009년 3월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ISBN 978-89-5710-082-0

정가 10,000원